

공연장 외 공연 안전 매뉴얼



공연장 외 공연 안전 매뉴얼은 공연을 하려는 자와 시설 및 장소 관리자, 관할 지자체 시·군·구관계자가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안전하게 공연을 기획하여 진행하고 마무리할 수 있도록 공연 프로세스별 안전관리를 위한 규정을 안내하기 위해 개발되었습니다.

2024. 12.



본 매뉴얼은 공연장 외 공연에서 공연을 주재하는 자와 시설 및 장소 운영자, 관할 지자체(시·군·구) 담당자가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안전하게 공연을 기획하여 진행하고 마무리할 수 있도록 공연 프로세스별 안전관리 규정을 안내하기 위하여 개발되었습니다.

공연장 외 공연 관계자는 각 공연장 외 공연의 운영 및 특성에 맞게 적용, 변경, 수정하여 사용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매뉴얼은 공연장 외 공연의 기획·준비·운영·철수 단계별 법적 사항을 중심으로 안전관리 규정을 안내하고 있으며, 법령 개정 등으로 인해 본 매뉴얼의 내용과 현행 법령의 내용이 다를 수 있습니다.

2024. 12.

개발 참여

- 프로젝트 기획 | 공연안전지원센터
| 김동균 센터장, 윤성흠 주임연구원, 강민석 주임연구원
- 자료 연구·작성 | 윤성흠 주임연구원

매뉴얼 주요 제·개정 현황 및 내용

제·개정일 (승인일자)	주요내용	사 유	담당직원	협약기관
2024.12.	매뉴얼 제정	제정	공연안전지원센터 윤성흠 주임연구원	-

매뉴얼 작성 기본 원칙

- ◆ 본 매뉴얼은 공연장 외 공연에서 공연을 주재하는 자와 시설 및 장소 운영자, 관할지자체(시·군·구) 담당자가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안전하게 공연을 기획하여 진행하고 마무리할 수 있도록 공연 프로세스별 안전관리를 위한 규정을 안내함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 ◆ 본 매뉴얼은 공연 주최자, 공연시설 및 장소 운영자, 관할지자체 담당자로 분류하여, 주체별로 공연장 외 공연의 안전관리에 관한 주요 규정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 ◆ 본 매뉴얼은 공연장 외 공연의 기획·준비·운영·철수 단계별 법적 사항을 중심으로 안전관리 규정을 안내하고 있으며, 법령 개정 등으로 인해 본 매뉴얼의 내용과 현행 법령의 내용이 다를 수 있습니다.
- ◆ 본 매뉴얼은 법령에 관련된 규정을 중심으로 최소한의 안전관리 사항을 안내하고 있으며, 재해대처계획 작성·가설구조물 설치 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은 추후 안내서 및 가이드 형식으로 발행할 예정입니다.

제1장 |

개요

1.1	매뉴얼 개발 목적	1
1.2	매뉴얼 용어 정의	1
1.3	매뉴얼 활용 방법	2
1.4	매뉴얼 참고 사항	2

제2장 |

공연장 외 공연 사고 사례

2.1	공연장 외 공연 주요 사고 사례	4
2.2	공연장 외 공연 사고 유형 통계	7

제3장 |

공연 주체별 안전관리 프로세스 및 주요 내용

3.1	공연 안전관리 프로세스	9
3.2	공연 기획 단계	11
3.3	공연 준비 단계	18
3.4	공연 운영 단계	28
3.5	공연 철거 단계	3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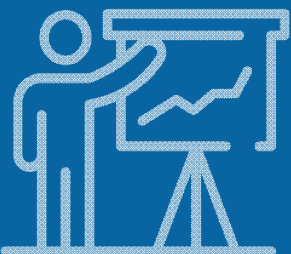
제4장 |

공연장 외 공연 안전관리 관련 규정

4.1	공연법	45
4.2	산업안전보건법	49
4.3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51
4.4	중대재해처벌법	56
4.5	기타 법령 및 규정	58

부록

1	공연 수용인원 산출 예시	64
2	비상 시 현장 대응 조치 가이드(압사 사고 관련)	68
3	대관 운영 규정을 통한 안전 확보 방안	69
4	피난안내도의 비치 대상 등	72



개요

- 1.1 매뉴얼 개발 목적 _1
- 1.2 매뉴얼 용어 정의 _1
- 1.3 매뉴얼 활용 방법 _2
- 1.4 매뉴얼 참고 사항 _2



1. 개요

1.1 매뉴얼 개발 목적

- 1.1.1 공연장 외 공연은 공연장으로 등록되지 않은 장소 및 시설에서 진행되는 공연으로, 상대적으로 짧은 준비기간과 날씨나 기존 시설물 등의 외부 환경요인으로 인해 위험요인이 증가한다.
- 1.1.2 따라서 본 매뉴얼은 공연장 외 공연에서 공연을 주재하는 자와 시설 및 장소 운영자, 관할지자체 담당자가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안전하게 공연을 기획하여 진행하고 마무리할 수 있도록 공연 프로세스별 안전관리를 위한 규정을 안내함에 그 목적이 있다.

1.2 매뉴얼 용어 정의

- 1.2.1 **공연장 외 공연** : 공연장* 외의 장소에서 진행되는 공연

* **공연장** : 공연을 주된 목적으로 설치하여 운영하는 시설로서 연간 90일 이상 또는 계속하여 30일 이상 공연에 제공할 목적으로 설치하여 운영하는 시설

- 1.2.2 **공연을 주재하는 자(주최 및 주관)** : 공연장 외의 장소에서 공연을 하려는 자로서 공연을 기획하여 열거나 해당 공연을 책임지고 맡아 관리하는 자
- 1.2.3 **공연을 주재하는 자(용역 수급자)** : 주최 및 주관과 계약 형태로 공연의 일부 업무를 수급받아 용역 업무를 수행하는 자
- 1.2.4 **시설 및 장소 운영자** : 해당 공연이 진행될 예정인 시설이나 장소를 소유하거나 직접 운영하는 자
- 1.2.5 **관할지자체 담당자** : 해당 공연이 진행되는 지역(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에서 공연 업무를 담당하는 자

1.3 매뉴얼 활용 방법

- 1.3.1 본 매뉴얼은 공연을 주재하는 자(주최 및 주관, 용역 수급자), 시설 및 장소 운영자, 관할지자체 담당자로 분류하여, **주체별로 공연장 외 공연의 안전관리에 관한 주요 규정 내용을** 다루고 있다.
- 1.3.2 주체별로「Ⅲ. 공연 주체별 안전관리 프로세스」를 참고하여 확인하여야 할 규정에 대해「IV. 공연장 외 공연 안전관리 관련 규정」에서 규정에 대한 상세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 1.3.3 **공연을 주재하는 자**는 본 매뉴얼을 통해 기획하는 공연장 외 공연의 유형과 예상되는 관람객 등을 고려하여 안전한 공연을 진행할 수 있도록 공연 기획 단계부터 철거 단계까지 준수하여야 할 안전관리 규정을 확인할 수 있다.
- 1.3.4 **시설 및 장소 관리자**는 본 매뉴얼을 통해 관리하는 시설 및 장소의 구조, 설비 및 환경 등의 특성에 따라 자체 규정을 마련하고, 공연을 하려는 자에게 자체 규정을 적용·관리하여, 시설 및 장소를 이용하는 자(공연 관람객 등)의 안전 관리체계를 확보하기 위해 본 매뉴얼을 활용할 수 있다.
- 1.3.5 **관할지자체 담당자**(재해대처계획 접수 담당 등)는 공연 주최로부터 재해대처계획을 제출받으면, 그 계획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공연 현장 등을 점검하여 관내 공연시설 및 장소에서 안전한 공연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리하기 위해 본 매뉴얼을 활용할 수 있다.

1.4 매뉴얼 참고 사항

- 1.4.1 본 매뉴얼은 공연장 외 공연의 기획·준비·운영·철수 단계별 법적 사항을 중심으로 안전관리 규정을 안내하고 있으며, 법령 개정 등으로 인해 본 매뉴얼의 내용과 현행 법령의 내용이 다를 수 있습니다.
- 1.4.2 본 매뉴얼은 법령에 관련된 규정을 중심으로 최소한의 안전관리 사항을 안내하고 있으며, 재해대처계획 작성·가설구조물 설치 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은 추후 안내서 및 가이드 형식으로 발행할 예정입니다.

공연장 외 공연 사고 사례



2.1 공연장 외 공연 주요 사고 사례 _4

2.2 공연장 외 공연 사고 유형 통계 _7

2. 공연장 외 공연 사고 사례

2.1 공연장 외 공연 주요 사고 사례

2.1.1 관객 사고

발생지역 (연도)	주요 내용	피해 정도
대구 북구 (‘95년)	'젊음의 뽀뽀 012 콘서트' 공연장에서 1만여명의 관객이 한꺼번에 입장하려다 넘어져 부상	8명 부상
대구 달서 (‘96년)	MBC '별이 빛나는 밤에' 공개방송에서 앞으로 몰리던 관객들이 앞쪽 관중들을 덮침	1명 사망, 5명 부상
전남 순천 (‘98년)	'소년소녀가장돕기 콘서트'에서 여학생 팬들이 그룹 HOT 보고 몰려들면서 넘어짐	10명 부상
대구 달서 (‘02년)	한가위 효 콘서트에서 입장 도중 뒤에서 밀린 관객들이 넘어짐	4명 부상
충북 청주 (‘04년)	개교 기념 공연에서 공연장 입장 중 뒷 사람에게 밀려 넘어짐	13명 부상
경기 성남 (‘05년)	음악전문 케이블 방송 녹화 도중 관객들이 무대로 한꺼번에 몰리면서 넘어짐	10명 부상
경북 상주 (‘05년)	MBC 가요콘서트 녹화현장을 보기 위해 입장하던 관객이 한꺼번에 몰리면서 앞사람이 넘어지고 뒤따르는 사람들이 잇달아 넘어지는 압사사고	11명 사망, 162명 부상
경기 성남 (‘14년)	공연 관객 일부가 환풍구 아래로 추락	16명 사망, 11명 부상
부산 남구 (‘16년)	공연을 관람중인 관객이 채광창 아래로 추락	2명 부상
서울 중구 (‘19년)	스탠딩 펜스 전도로 인한 관객 부상	5명 부상
서울 종로 (‘22년)	광화문광장에서 태권도 공연 중 송판 파편에 관객 부상(코뼈 골절)	1명 부상
부산 수영 (‘22년)	드론쇼 중 드론 1대가 관람객의 발 위로 떨어져 관객 부상(발가락 타박상)	1명 부상
전남 여수 (‘23년)	공연(싸이 흠뻑쇼) 종료 후 퇴장하려는 관객들이 몰려 관객 부상(왼쪽 무릎 봉합)	1명 부상

2. 공연자 외 공연 사고 사례

발생지역 (연도)	주요 내용	피해 정도
부산 수영 (23년)	드론쇼 중 촬영용 드론 1대가 추락하여 관객 2명 부상 (허벅지 찰과상 및 발가락 타박상)	2명 부상
인천 중구 (24년)	야외 공연장 입장 대기 중 펜스가 넘어지면서 사고 발생	2명 부상
광주 서구 (24년)	공연 관람 중 7명 온열질환 증세로 병원 이송	7명 부상
서울 성동 (24년)	공연(보일러룸 서울 2024) 중 관객 밀집으로 공연 중단	-
강원 속초 (24년)	공연 후 공연장 주차장에서 관객이 공연장 관계자에게 뺑소니를 당함	1명 부상
충북 제천 (24년)	공연 중 특수효과(폭죽) 사고로 관객 부상	17명 부상

[표 1] 공연장 외 공연 주요 관객 사고 사례

2.1.2 공연자 사고

발생지역 (연도)	주요 내용	피해 정도
경기 의정부 (16년)	콘서트 중 출연자가 무대에서 추락	1명 부상
서울 송파 (17년)	콘서트 중 무대장치에서 출연자 추락	1명 부상
서울 성북 (18년)	콘서트 도중 공연자가 무대 아래로 추락	1명 부상
서울 구로 (18년)	콘서트 도중 출연자 2명 충돌	1명 부상
서울 구로 (19년)	리허설 도중 무대 아래로 추락	1명 부상
인천 중구 (22년)	공연중 무대 효과 장치(폭죽가루)로 인한 눈 부상(각막 상처) 발생	1명 부상
경기 안양 (22년)	축제 공연 중 관객석으로 다이빙하는 퍼포먼스를 진행하였으나 바닥으로 추락	1명 부상
울산 중구 (23년)	공연중 무대 효과 장치(폭죽 연기)로 인한 출연자 부상	1명 부상
인천 중구 (23년)	공연 중 리프트 아래로 추락	1명 부상

2. 공연자 외 공연 사고 사례

발생지역 (연도)	주요 내용	피해 정도
강원 영월 (24년)	동문회 공연 중 연주자 심정지 후 회복	-
전남 해남 (24년)	공연 중 폭염으로 인한 공연자 실신으로 무대 중단	-
전남 광양 (24년)	공연 중 특수효과(폭죽) 사고로 연주자 부상	2명 부상

[표 2] 공연장 외 공연 주요 공연자 사고 사례

2.1.3 작업자 사고

발생지역 (연도)	주요 내용	피해 정도
경기 안산 (13년)	안산밸리룩페스티벌 행사장 송풍기 설치를 위해 콘센트를 꽂던 행사 관계자가 감전	1명 사망
부산 연제 (14년)	무대 구조물을 설치하던 고소 작업자 추락	1명 부상
강원 강릉 (22년)	공연 무대 철거 중 스태프 1명 추락사고 발생	1명 사망
경기 하남 (23년)	무대 설치작업 중 무대 구조물 쓰러져 작업자 8명 부상	8명 부상
광주 서구 (23년)	무대 설치작업 중 무대장치 전도로 작업자 4명 부상	4명 부상

[표 3] 공연장 외 공연 주요 작업자 사고 사례

2.1.4 무대장치 사고

발생지역 (연도)	주요 내용	피해 정도
대전 중구 (06년)	높이 5~6m 위에 설치된 지름 8m, 무게 800kg의 원형조명시설이 무대로 추락하여 무대에 있던 손님이 부상	24명 부상
경북 안동 (15년)	리허설 중 무대파손에 의한 출연자 추락	5명 부상
강원 강릉 (18년)	강풍에 의해 야외공연장 전광판 전도	8명 부상

발생지역 (연도)	주요 내용	피해 정도
인천 부평 (20년)	부평캠프마켓 개방 행사 중 LED 전광판 전도로 관객 부상	6명 부상
경기 과천 (24년)	공연 중 악천후로 인한 무대장치 추락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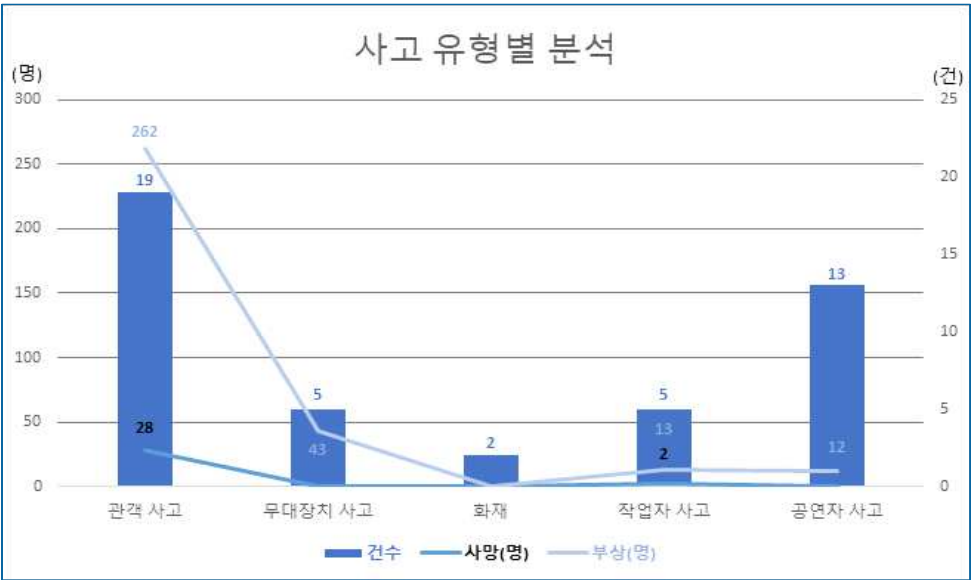
[표 4] 공연장 외 공연 주요 무대장치 사고 사례

2.1.5 화재 사고

발생지역 (연도)	주요 내용	피해 정도
서울 송파 (12년)	가수 싸이 콘서트 중 조명시설에서 화재 발생	-
서울 마포 (24년)	사전녹화 진행 중 무대 세트에서 화재 발생	-

[표 5] 공연장 외 공연 주요 화재 사고 사례

2.2 공연장 외 공연 사고 유형 통계



[그림 1] 공연장 외 공연 사고 유형 통계

공연 주체별 안전관리 프로세스 및 주요 내용



3.1 공연 안전관리 프로세스	_9
3.2 공연 기획 단계	_11
3.3 공연 준비 단계	_18
3.4 공연 운영 단계	_28
3.5 공연 철거 단계	_3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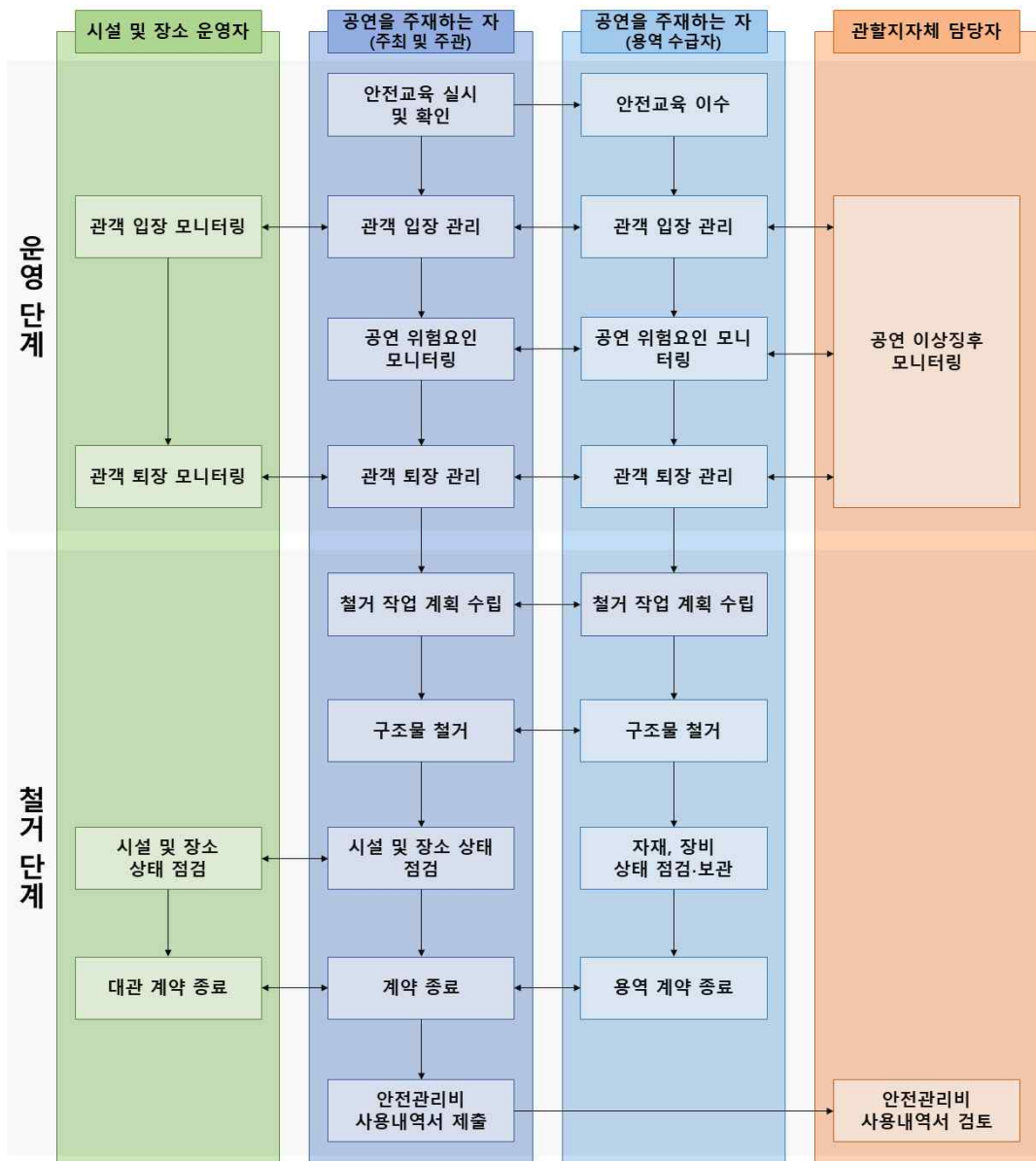
3. 공연 주체별 안전관리 프로세스 및 주요 내용

3.1 공연 안전관리 프로세스



[그림 2] 공연 안전관리 프로세스(기획 단계 - 준비 단계)

3.1 공연 안전관리 프로세스



[그림 3] 공연 안전관리 프로세스(운영 단계 - 철거 단계)

3.2 공연 기획 단계

3.2.1 공연 기획 단계 프로세스



[그림 4] 공연 기획 단계 프로세스

3.2.2 공연을 주재하는 자(주최 및 주관)

• 주요 안전관리 사항

단계	주요 안전관리 사항	이해관계자
공연 기획	- 공연 유형과 예상되는 관람객 수 산정	-
시설 및 장소 대관 계약	- 공연 유형 및 예상 관람객 수에 따른 시설 및 장소 적정성 검토	-
용역 계약 체결	- 공연 정보 제공 및 업체 역량 확인	용역 수급자
재해대처계획 수립 및 신고	- 재해대처계획 수립 및 공동 신고	용역 수급자 시설 및 장소 운영자

[표 6] 공연 기획 단계 주요 안전관리 사항(주최 및 주관)

• 「공연 기획」 안전관리 조치 사항

공연 유형과 예상되는 관람객 수 산정	
안전관리 조치 사항	규정
- 공연 시설 및 장소를 정하기 전에 공연 유형(장르, 객석/스탠딩/복합, 실내/야외 공연)을 정하여야 한다.	-
- 관람객 수를 산정하는 경우, 순간 예상되는 최대 관람객 수로 예상되는 관람객 수를 산정하여야 한다.	-
- 티켓을 판매하는 공연인 경우, 티켓 판매 수량뿐만 아니라 초대권 등의 수량을 파악하여 관람객 수를 산정하여야 한다.	
- 티켓을 판매하지 않는 오픈 공연인 경우, 이전에 비슷한 공연 사례를 참조하여 보수적으로 관람객 수를 산정하여야 한다.	

• 「시설 및 장소 대관 계약」 안전관리 조치 사항

시설 및 장소 적정성 검토	
안전관리 조치 사항	규정
- 공연 유형과 목적에 따라 예상되는 관람객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 및 장소인지 확인하여야 한다. ※ 참고: 공연 관객 안전관리 체크리스트 (공연안전지원센터, 2024) , [부록1] 공연 수용인원 산출 예시	-
- 공연 유형에 따라 예상되는 공연자 및 관람객의 하중을 견딜 수 있는 시설물 이거나, 구조물을 설치할 수 있는 장소인지 확인하여야 한다. ※ 참고: [부록3] 대관 운영 규정을 통한 안전 확보 방안	-

• 「용역 계약 체결」 안전관리 조치 사항

공연 정보 제공 및 업체 역량 확인	
안전관리 조치 사항	규정
- 공연 기획 단계에서 수립된 공연 유형과 예상되는 관람객 수 정보와 시설 및 장소 정보를 용역 수급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
- 해당 용역 수급자가 기획된 공연을 안전하게 진행할 수 있는 업체인지 역량을 확인하여야 한다.	-

• 「재해대처계획 수립 및 신고」 안전관리 조치 사항

재해대처계획 수립 및 공동 신고	
안전관리 조치 사항	규정
- 공연장 외의 장소에서 1천명 이상의 관람이 예상되는 공연을 하려는 자는 시설 및 장소의 환경 요인을 고려하여 다음 사항이 포함된 재해대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공연장 시설 등을 관리하는 자의 임무 및 관리 조직에 관한 사항 · 비상시 하여야 할 조치 및 연락처에 관한 사항 · 화재예방 및 인명피해 방지조치에 관한 사항 · 안전관리비, 안전관리조직, 안전교육 및 피난안내에 관한 사항 · 안전관리인력 확보 및 배치 계획 · 공연계획서 - 수립된 재해대처계획서는 공연 개시 14일 전까지 장소·시설 운영자와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변경 신고는 공연 개시 7일 전까지) ※ 참고: 재해대처계획 작성 안내서 (공연장안전지원센터, 2021)	공연법 제11조 (p.45)
- 재해대처계획서에는 아래의 기준에 따른 안전관리비를 계상하여야 한다. · 1천명 이상 3천명 미만의 관람이 예상되는 경우: 공연비용의 1.15% 이상 · 3천명 이상의 관람이 예상되는 경우: 공연비용의 1.21% 이상	공연법 제11조의2 (p.46)
- 아래 기준의 안전관리조직을 설치하고 내용을 재해대처계획에 포함시켜야 한다. · 1천명 이상 3천명 미만의 관람 예상: 안전총괄책임자 1명, 안전관리담당자 1명 이상 · 3천명 이상의 관람 예상: 안전총괄책임자 1명 및 안전관리담당자 2명 이상 ※ 안전총괄책임자, 안전관리담당자 인적사항 및 업무 수행 내용 기록 · 보관	공연법 제11조의3 (p.46)
- 아래 기준의 안전교육에 대한 내용을 재해대처계획에 포함시켜야 한다. · 안전총괄책임자: 4시간 이상 · 안전관리담당자: 8시간 이상 ※ 지정된 후 6개월 이내 또는 이전 교육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 기준으로 전후 각각 3개월 이내 해당 시간의 교육 수료	공연법 제11조의4 (p.47)
- 지역 축제에 포함되어 있는 공연일 경우, 지역축제에 대한 관할 자치단체, 소방서 및 경찰서 등 안전관리 유관기관의 의견을 미리 듣고 안전관리계획서를 별도로 수립하여야 한다.	재난안전법 제66조의11 (p.58)
- 공연 유형에 따라 예상되는 관람객의 군중 심리를 고려하여 관람객 구역 설정 및 관람객 안전관리인력 배치 등 군중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 날씨(폭우, 폭설, 폭염, 강풍 등)에 대한 대처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참고: 야외공연 폭염대응 안전관리보건 안내서 (공연장안전지원센터, 2023)	-
- 순간 최대 관람객이 1천명 이상 예상되는 행사의 경우 아래의 응급의료 인력 등을 확보해야 한다.(단, 공연법에 따라 재해대처계획의 신고가 수리된 행사 제외) · 응급의료 인력: 응급구조사, 의사 또는 간호사 1명 · 응급이송수단: 구급차 등 1대	응급의료법 제54조의3 (p.63)
- 웅벽, 절개지, 바닥하중 취약구역 등 위험 요인이 있는 시설·장소에서 공연을 하는 경우 접근 통제 등에 대한 조치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3.2.3 공연을 주재하는 자(용역 수급자)

• 주요 안전관리 사항

단계	주요 안전관리 사항	이해관계자
용역 계약	- 공연 기획 정보 확인 및 검토	주최 및 주관
재해대처계획 수립	- 재해대처계획 수립 및 검토	주최 및 주관 시설 및 장소 운영자

[표 7] 공연 기획 단계 주요 안전관리 사항(용역 수급자)

• 「용역 계약」 안전관리 조치 사항

공연 기획 정보 확인 및 검토	
안전관리 조치 사항	규정
- 주최 및 주관이 제공하는 공연 기획 정보를 확인하여 준비 시간이 충분한지 등 안전하게 공연을 준비 및 진행할 수 있는지 검토하여야 한다.	-
- 공연 기획 정보에 수정되어야 할 사항이 있으면 주최 및 주관과 충분한 협의를 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 「재해대처계획 수립」 안전관리 조치 사항

재해대처계획 수립 및 검토	
안전관리 조치 사항	규정
- 주최 및 주관이 수립한 재해대처계획의 「안전관리인력 확보 및 배치계획», 「비상시 하여야 할 조치 및 연락처에 관한 사항」 등에 잘못된 정보가 없는지 검토하여야 한다. ※ 참고: 재해대처계획 작성 안내서 (공연장안전지원센터, 2021)	공연법 제11조 (p.45)

3.2.4 시설 및 장소 운영자

• 주요 안전관리 사항

단계	주요 안전관리 사항	이해관계자
시설 및 장소 위험요인 파악	- 시설 및 장소에 대한 위험요인 파악 및 유지관리	-
시설 및 장소 대관 계약	- 시설 및 장소에 대한 안전 정보 제공 및 공연 적정성 검토	주최 및 주관
재해대처계획 검토 및 신고	- 수립된 재해대처계획 검토 및 공동 신고	주최 및 주관

[표 8] 공연 기획 단계 주요 안전관리 사항(시설 및 장소 운영자)

• 「시설 및 장소 위험요인 파악」 안전관리 조치 사항

시설 및 장소에 대한 위험요인 파악 및 유지관리	
안전관리 조치 사항	규정
- 시설 및 장소 운영자는 공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관람객 등의 안전을 위하여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 중대시민재해 대상 공중이용시설: 1천석 이상 공연장 및 실내 체육시설,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의 문화 및 집회시설 등	중대재해 처벌법 제9조제2항 (p.56)
- 시설 및 장소 운영자는 공중이용시설의 위험요인을 파악하여 개선하기 위한 업무처리절차를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 시설 및 장소 운영자는 해당 건축물, 대지 및 건축설비를 용도 등에 따라 해당하는 건축법(건축물의 피난시설 등)에 적합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건축물관리법 제12조 (p.63)
-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8조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관리자는 건축물의 안전과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화재안전, 구조안전 등에 대하여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 바닥면적 합계 5천제곱미터 이상인 문화 및 집회시설 등	건축물관리법 제13조 (p.63)
- 시설 및 장소에 설치되어 있는 소방시설 등이 적합하게 설치·관리되고 있는지 스스로 점검하고 점검결과를 평가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소방시설법 제22조 (p.61)

• 「시설 및 장소 대관 계약」 안전관리 조치 사항

시설 및 장소에 대한 안전 정보 제공 및 공연 적정성 검토	
안전관리 조치 사항	규정
- 시설 및 장소의 위험요인 파악 정보 및 유지관리 결과를 포함한 다음의 안전 정보를 공연을 주재하는자(주최 및 주관)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 구역별 수용 가능 인원 및 허용 하중 정보 · 시설에 설치된 소방시설 및 응급장비의 위치 및 사용방법 · 시설에 설치된 피난구조설비 및 피난경로에 대한 정보 · 시설 이용을 위한 자체 안전 규정(시설 및 장소 대관 규정 등) ※ 참고: 공연 관객 안전관리 체크리스트 (공연안전지원센터, 2024) [부록1] 공연 수용인원 산출 예시	-
- 시설 및 장소 운영자는 임무 및 관리조직에 관한 정보와 비상 상황 발생 시 관할 협조 기관(소방서, 경찰서, 병원, 관할지자체 등)의 연락처 정보를 공연을 주재하는 자(주최 및 주관)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
- 공연을 주재하는 자가 안전하게 공연을 진행할 수 있도록 요구사항이 있으면 이를 검토하고 필요시 조치하여야 한다.	-
- 공연을 주재하는 자가 기획한 공연이 해당 시설 및 장소에서 진행하기 적절한지 검토하고 보완사항이나 수정사항이 있을 경우 계약 전에 공연을 주재하는 자에게 알리고 협의하여야 한다. ※ 참고:[부록3] 대관 운영 규정을 통한 안전 확보 방안	-

• 「재해대처계획 검토 및 신고」 안전관리 조치 사항

수립된 재해대처계획 검토 및 공동 신고	
안전관리 조치 사항	규정
- 주최 및 주관이 수립한 재해대처계획에 「시설 및 장소 대관계약」에서 제공한 안전정보가 재해대처계획에 반영되도록 검토하여야 한다.	-
- 주최 및 주관이 수립한 재해대처계획의 「안전관리인력 확보 및 배치계획», 「비상시 하여야 할 조치 및 연락처에 관한 사항」 등에 잘못된 정보가 없는지 검토하고 공동으로 관할지자체에 신고하여야 한다. ※ 참고: 재해대처계획 작성 안내서 (공연장안전지원센터, 2021)	공연법 제11조 (p.45)

3.2.5 관할지자체 담당자

• 주요 안전관리 사항

단계	주요 안전관리 사항	이해관계자
공연 안전사고 대비	- 공연 안전사고 대비 행동매뉴얼 점검 및 숙지	-
재해대처계획 점검	- 재해대처계획 점검 및 소방서 통보	주최 및 주관 시설 및 장소 운영자

[표 9] 공연 기획 단계 주요 안전관리 사항(관할지자체 담당자)

• 「공연 안전사고 대비」 안전관리 조치 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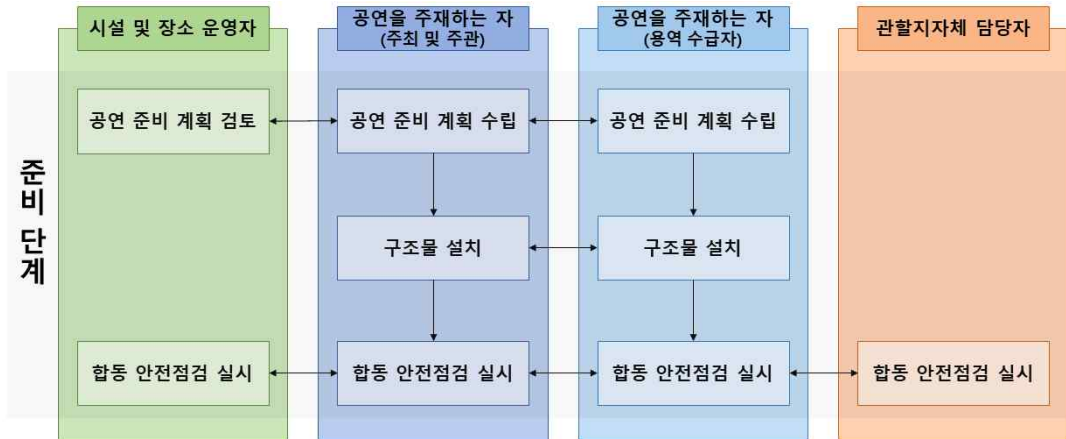
공연 안전사고 대비 행동매뉴얼 점검 및 숙지	
안전관리 조치 사항	규정
- 관할지자체 담당자는 공연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가 가동될 수 있으므로 평시에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의 재난 수습 총괄·조정 및 필요 조치 이행에 관한 사항을 숙지하는 등의 대비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 관할지자체 담당자는 공연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긴급구조통제단이 가동될 수 있으므로 평시에 긴급구조통제단의 임무와 역할에 관한 사항을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	-

• 「재해대처계획 점검」 안전관리 조치 사항

재해대처계획 점검 및 소방서 통보	
안전관리 조치 사항	규정
- 관할지자체 담당자는 공연자 외의 장소에서 공연을 하려는 자에게 재해대처 계획을 신고 받은 경우,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 공연장 시설 등을 관리하는 자의 임무 및 관리 조직에 관한 사항 · 비상시 하여야 할 조치 및 연락처에 관한 사항 · 화재예방 및 인명피해 방지조치에 관한 사항 · 안전관리비, 안전관리조직, 안전교육 및 피난안내에 관한 사항 · 안전관리인력 확보 및 배치 계획 · 공연계획서 - 관할지자체 담당자는 재해대처계획을 검토하여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고를 수리하여야 하며, 미흡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 관할지자체 담당자는 신고받은 재해대처계획을 관할 소방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공연법 제11조 (p.45)

3.3 공연 준비 단계

3.3.1 공연 준비 단계 프로세스



[그림 5] 공연 준비 단계 프로세스

3.3.2 공연을 주재하는 자(주최 및 주관)

• 주요 안전관리 사항

단계	주요 안전관리 사항	이해관계자
공연 준비 계획 수립	- 공연 준비 사전회의 및 작업 계획 수립	용역 수급자
	- 작업별 유해위험요인 점검 및 위험성평가 실시	시설 및 장소 운영자
	- 공연장 내 피난안내도 비치(1천명 이상의 관람자가 예상되는 경우)	시설 및 장소 운영자
구조물 설치	- 특수효과 사용에 대한 기준 계획 수립 및 점검	용역 수급자
	- 가설구조물 설계 적정성 확인 및 구조 검토 요청	시설 및 장소 운영자
	- 구조물 설치 작업자 자격요건 및 안전교육 실시 여부 확인	용역 수급자
	- 반입되는 자재, 시설 및 장비의 상태 점검	용역 수급자
	- 작업 안전 상태 점검	용역 수급자
합동 안전점검 실시	- 구조물 설치 상태 점검	시설 및 장소 운영자
	- 공연 전 합동 안전점검 실시 및 안전점검 조치사항 이행	용역 수급자 시설 및 장소 운영자 관할지자체 담당자

[표 10] 공연 준비 단계 주요 안전관리 사항(주최 및 주관)

• 「공연 준비 계획 수립」 안전관리 조치 사항

공연 준비 사전회의 및 작업 계획 수립	
안전관리 조치 사항	규정
- 주최 및 주관은 용역 수급자와 함께 공연 준비 전 작업 계획을 포함한 사전 회의(Tool Box Meeting)를 실시하여야 한다.	-
- 사전회의를 통해 수립된 작업 계획 등이 타당한지 시설 및 장소 운영자에게 검토 받는 것을 권장한다.	-
- 주최 및 주관은 용역 수급자가 높이 5미터 이상의 비계를 조립·해체하거나 변경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작업의 시기·범위 및 절차를 해당 작업자에게 주지시켰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안전보건규칙 제57조 (p.51)

작업별 유해위험요인 점검 및 위험성평가 실시	
안전관리 조치 사항	규정
- 공연예술 작업자*는 안전한 창작환경에서 공연예술에 필요한 활동을 수행할 권리를 가지며, 주최 및 주관은 이러한 권리를 보장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필요한 사항은 조치하거나 시설 및 장소 운영자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 무대시설의 설치, 운영 등을 위하여 공연 현장에서 일하는 자	공연법 제10조의2 (p.45)
- 주최 및 주관은 건설물, 기계·기구·설비, 근로자의 작업행동 등으로 인한 유해·위험요인을 찾아내어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고 조치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p.50)

공연장 내 피난안내도 비치	
안전관리 조치 사항	규정
- 주최 및 주관은 1천명 이상의 관람자가 예상되는 경우 위급상황 발생 시 관람자가 안전하게 피난할 수 있도록 피난안내도를 갖추어 두거나 피난 절차, 피난 방법, 공연 특수상황 등 관람자가 알고 있어야 할 사항을 공연 시작 전 관람자에게 주지시켜야 한다. ※ 공연을 하는 장소가 외부에 공개되어 있어 비상 시 관람객이 바로 대피할 수 있는 경우에는 피난안내도를 비치하지 않을 수 있음	공연법 제11조의5 (p.48)

특수효과 사용에 대한 기준 계획 수립 및 점검	
안전관리 조치 사항	규정
- 공연 중 특수효과(레이저, 안개효과, 불꽃 등)를 사용할 경우, 시설 및 장소 운영자와 협의하여 사용 범위를 정하여야 하며, 위험성 평가를 권장한다. ※ 참고: 공연 특수효과 사용안전 1~3 (공연장안전지원센터, 2012)	-

• 「구조물 설치」 안전관리 조치 사항

가설구조물 설계 적정성 확인 및 구조 검토 요청	
안전관리 조치 사항	규정
- 주최 및 주관은 가설구조물을 구축하는 용역수급자와 함께 구축물 등이 고정 하중, 적재하중, 시공·해체 작업 중 발생하는 하중 등에 의하여 전도·폭발하거나 무너지는 등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설계도면, 시방서, 구조설계도서, 해체계획서 등 설계도서를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안전보건규칙 제51조 (p.51)
- 주최 및 주관은 가설구조물을 구축하는 용역수급자와 함께 구축물 등이 그 자체의 무게·적설·풍압 또는 그 밖에 부가되는 하중 등으로 붕괴 등의 위험이 있는 경우 구조검토, 안전진단 등의 안전성평가를 하여 근로자에게 미칠 위험성을 제거해야 한다. ※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산업안전과-5136, 2016.11.11.)에 따르면 축제, 공연, 행사를 위한 시설물의 일부분으로 설치되는 구조물인 경우, 구조물 자체의 중량, 조명, 무대장비 등의 적재하중, 풍압 등에 의해 붕괴·전도·도괴 등의 위험으로부터 구조안전성을 확보해야 하는 독립된 구축물로 판단됨	안전보건규칙 제52조 (p.52)

구조물 설치 작업자 자격요건 및 안전교육 실시 여부 확인	
안전관리 조치 사항	규정
- 비계 조립·해체 작업을 하는 작업자는 비계기능사보 이상의 자격, 3개월 이상 해당 작업에 경험이 있는 사람 등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가 작업하여야 하며, 주최 및 주관은 해당 작업자가 자격여부를 충족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취업제한규칙 제3조 (p.49)
- 비계 조립·해체 또는 변경작업을 하는 사업주(용역 수급자)는 해당 작업자에게 특별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주최 및 주관은 작업자가 해당 특별교육을 받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p.49)

반입되는 자재, 시설 및 장비의 상태 점검	
안전관리 조치 사항	규정
- 실내장식 등의 목적으로 설치 또는 부착하는 무대용 합판, 무대막 등은 방염 대상물품으로 방염성능기준 이상의 것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소방시설법 제20조 (p.61)
- 반입되는 자재, 시설 및 장비에 균열, 부식 등의 결함이 없는지 검수하여야 한다.	-
- 반입되는 자재, 시설 및 장비의 치수, 재료, 강도 등이 설계도서와 일치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

작업 안전 상태 점검	
안전관리 조치 사항	규정
- 공연예술 작업자*는 안전한 창작환경에서 공연예술에 필요한 활동을 수행할 권리를 가지며, 주최 및 주관은 이러한 권리를 보장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필요한 사항은 조치하거나 시설 및 장소 운영자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공연법 10조의2 (p.45)
- 주최 및 주관은 작업자가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알맞은 보호구를 지급하여야 하며, 작업자가 사전에 수립한 작업절차 및 안전보건규칙에 따라 안전하고 올바르게 작업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 참고: 공연장 외 공연 안전 관리 가이드 (공연장안전지원센터, 2023)	안전보건규칙 제8조 등 (4.3.3. 참고, p.52)

구조물 설치 상태 점검	
안전관리 조치 사항	규정
- 주최 및 주관은 가설구조물이 설계도서에 맞게 설치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하며, 구조검토를 담당한 구조기술사가 직접 설치 상태를 점검하는 것을 권장한다.	안전보건규칙 제59조 등 (4.3.4. 참고, p.54)
- 주최 및 주관은 가설구조물의 체결상태, 무대바닥 설치 상태, 전도방지상태 등이 올바르게 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 참고: 공연장 외 공연 안전 관리 가이드 (공연장안전지원센터, 2023)	

• 「합동 안전점검 실시」 안전관리 조치 사항

공연 전 합동 안전점검 실시 및 안전점검 조치사항 이행	
안전관리 조치 사항	규정
- 주최 및 주관은 용역 수급자, 관할지자체 담당자, 시설 및 장소 운영자를 포함한 관계자들(관할 소방서 협조 요청)과 함께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 참고: 공연장 외 공연 안전 관리 가이드 (공연장안전지원센터, 2023)	-
- 주최 및 주관은 합동 안전점검 결과 조치해야 할 사항이 발견되면 공연 시작 전에 반드시 조치하여야 한다.	-

3.3.3 공연을 주재하는 자(용역 수급자)

• 주요 안전관리 사항

단계	주요 안전관리 사항	이해관계자
공연 준비 계획 수립	- 공연 준비 사전회의 및 작업 계획 수립 - 작업별 유해위험요인 점검 및 위험성평가 실시	주최 및 주관
구조물 설치	- 가설구조물 설치 계획 수립 및 구조 검토 요청	주최 및 주관
	- 구조물 설치 작업자 자격요건 확인 및 안전교육 실시	주최 및 주관
	- 반입되는 자재, 시설 및 장비의 상태 점검	주최 및 주관
	- 작업계획에 따른 작업 실시 여부 및 작업 안전 상태 점검	주최 및 주관
	- 구조물 설치 상태 점검	시설 및 장소 운영자
합동 안전점검 실시	- 특수효과 사용에 대한 상태 점검	주최 및 주관
	- 공연 전 합동 안전점검 실시 및 안전점검 조치사항 이행	시설 및 장소 운영자 관할지자체 담당자

[표 11] 공연 준비 단계 주요 안전관리 사항(용역 수급자)

• 「공연 준비 계획 수립」 안전관리 조치 사항

공연 준비 사전회의 및 작업 계획 수립	
안전관리 조치 사항	규정
- 용역 수급자는 주최 및 주관과 함께 공연 준비 전 작업 계획을 포함한 사전 회의(Tool Box Meeting)를 실시하여야 한다.	-
- 용역 수급자는 높이 5미터 이상의 비계를 조립·해체하거나 변경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작업의 시기·범위 및 절차를 해당 작업자에게 주지시켜야 한다.	안전보건규칙 제57조 (p.51)

작업별 유해위험요인 점검 및 위험성평가 실시	
안전관리 조치 사항	규정
- 공연예술 작업자*는 안전한 창작환경에서 공연예술에 필요한 활동을 수행할 권리를 가지며, 용역 수급자는 필요한 사항에 대해 주최 및 주관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 무대시설의 설치, 운영 등을 위하여 공연 현장에서 일하는 자	공연법 제10조의2 (p.45)
- 용역 수급자는 건설물, 기계·기구·설비, 근로자의 작업행동 등으로 인한 유해·위험요인을 찾아내어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고 조치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p.50)

• 「구조물 설치」 안전관리 조치 사항

가설구조물 설치 계획 수립 및 구조 검토 요청	
안전관리 조치 사항	규정
- 가설구조물을 구축하는 용역수급자는 주최 및 주관과 함께 구축물 등이 고정 하중, 적재하중, 시공·해체 작업 중 발생하는 하중 등에 의하여 전도·폭발하거나 무너지는 등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설계도면, 시방서, 구조설계도서, 해체계획서 등 설계도서를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안전보건규칙 제51조 (p.51)
- 가설구조물을 구축하는 용역수급자는 주최 및 주관과 함께 구축물 등이 그 자체의 무게·적설·풍압 또는 그 밖에 부가되는 하중 등으로 붕괴 등의 위험이 있는 경우 구조검토, 안전진단 등의 안전성평가를 하여 근로자에게 미칠 위험성을 제거해야 한다. ※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산업안전과-5136, 2016.11.11.)에 따르면 축제, 공연, 행사를 위한 시설물의 일부분으로 설치되는 구조물인 경우, 구조물 자체의 중량, 조명, 무대장비 등의 적재하중, 풍압 등에 의해 붕괴·전도·도괴 등의 위험으로부터 구조안전성을 확보해야 하는 독립된 구축물로 판단됨	안전보건규칙 제52조 (p.52)

구조물 설치 작업자 자격요건 확인 및 안전교육 실시	
안전관리 조치 사항	규정
- 비계 조립·해체 작업을 하는 작업자는 비계기능사보 이상의 자격, 3개월 이상 해당 작업에 경험이 있는 사람 등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가 작업하여야 하며, 용역 수급자는 해당 작업자가 자격여부를 충족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취업제한규칙 제3조 (p.49)
- 비계 조립·해체 또는 변경작업을 하는 용역 수급자는 해당 작업자에게 특별 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그 결과를 주최 및 주관에게 알려야 한다.	산업안전보건 제29조 (p.49)

반입되는 자재, 시설 및 장비의 상태 점검	
안전관리 조치 사항	규정
- 실내장식 등의 목적으로 설치 또는 부착하는 무대용 합판, 무대막 등은 방염 대상물품으로 방염성능기준 이상의 것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소방시설법 제20조 (p.61)
- 반입되는 자재, 시설 및 장비에 균열, 부식 등의 결함이 없는지 검수하여야 한다.	-
- 반입되는 자재, 시설 및 장비의 치수, 재료, 강도 등이 설계도서와 일치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

작업계획에 따른 작업 실시 여부 및 작업 안전 상태 점검	
안전관리 조치 사항	규정
- 공연예술 작업자*는 안전한 창작환경에서 공연예술에 필요한 활동을 수행할 권리를 가지며, 용역 수급자는 필요한 사항에 대해 주최 및 주관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 무대시설의 설치, 운영 등을 위하여 공연 현장에서 일하는 자 - 용역 수급자는 작업자가 알맞은 보호구를 착용하고 올바른 작업 자세 및 방법으로 작업하는지, 사전에 수립한 작업절차 및 안전보건규칙에 따라 안전하고 올바르게 작업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 참고: 공연장 외 공연 안전 관리 가이드 (공연장안전지원센터, 2023)	공연법 제10조의2 (p.45) 안전보건규칙 제8조 등 (4.3.3. 참고, p.52)

구조물 설치 상태 점검	
안전관리 조치 사항	규정
- 가설구조물 구축 용역 수급자는 가설구조물이 설계도서에 맞게 설치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하며, 구조기술사 등이 보강·변경 등 조치 요청을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가설구조물 구축 용역 수급자는 가설구조물의 체결상태, 무대바닥 설치 상태, 전도방지상태 등이 올바르게 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 참고: 공연장 외 공연 안전 관리 가이드 (공연장안전지원센터, 2023)	안전보건규칙 제59조 등 (4.3.4. 참고, p.54)

특수효과 사용에 대한 상태 점검	
안전관리 조치 사항	규정
- 공연 중 특수효과(레이저, 안개효과, 불꽃 등)를 사용할 예정인 경우, 시설 및 장소 운영자와 주최 및 주관의 협의한 사용 기준에 맞게 설치 되었는지 점검하여야 하며, 위험성 평가를 권장한다. ※ 참고: 공연 특수효과 사용안전 1~3 (공연장안전지원센터, 2012)	

• 「합동 안전점검 실시」 안전관리 조치 사항

공연 전 합동 안전점검 실시 및 안전점검 조치사항 이행	
안전관리 조치 사항	규정
- 용역 수급자는 주최 및 주관, 관할지자체 담당자, 시설 및 장소 운영자를 포함한 관계자들(관할 소방서 협조 요청)과 함께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 참고: 공연장 외 공연 안전 관리 가이드 (공연장안전지원센터, 2023)	-
- 합동 안전점검 결과 관계자(주최 및 주관, 관할지자체 담당자, 시설 및 장소 운영자, 소방서 등)가 조치 요청을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조치하여야 한다.	-

3.3.4 시설 및 장소 운영자

• 주요 안전관리 사항

단계	주요 안전관리 사항	이해관계자
공연 준비 계획 검토	- 주최 및 주관이 수립한 공연 준비 계획 안전성 검토	주최 및 주관
	- 공연장 내 피난안내도 비치(1천명 이상의 관람자가 예상되는 경우)	
	- 공연 중 특수효과에 대한 사용 기준 계획 협의	
합동 안전점검 실시	- 공연 전 합동 안전점검 실시 및 안전점검 조치사항 이행	주최 및 주관 용역 수급자 관할지자체 담당자

[표 12] 공연 준비 단계 주요 안전관리 사항(시설 및 장소 운영자)

• 「공연 준비 계획 검토」 안전관리 조치 사항

주최 및 주관이 수립한 공연 준비 계획 안전성 검토	
안전관리 조치 사항	규정
- 주최 및 주관이 수립한 공연 준비 계획에 시설 및 장소 운영자가 「공연 기획 단계」에서 주최 및 주관에게 제공한 시설 및 장소 안전 정보가 반영되었는지 검토하여야 한다.	중대재해 처벌법 제9조제2항 (p.56)

공연장 내 피난안내도 비치	
안전관리 조치 사항	규정
- 시설 및 장소 운영자는 1천명 이상의 관람자가 예상되는 경우 주최 및 주관 이 피난안내도를 비치할 수 있도록 기존 시설 및 장소에 대한 피난안내도 등의 정보를 제공할 것을 권장한다. (다만, 공연장이 외부에 공개되어 있어 비상 시 관람객이 바로 대피할 수 있는 경우에는 비치하지 않을 수 있다.)	공연법 제11조의5 (p.48)

공연 중 특수효과에 대한 사용 기준 계획	
안전관리 조치 사항	규정
- 시설 및 장소 운영자는 공연 중 특수효과(레이저, 안개효과, 불꽃 등)가 사용되는 경우, 주최 및 주관과 특수 효과 사용에 대한 기준을 협의하여야 한다. ※ 참고: 공연 특수효과 사용안전 1~3 (공연장안전지원센터, 2012)	-

• 「합동 안전점검 실시」 안전관리 조치 사항

공연 전 합동 안전점검 실시 및 안전점검 조치사항 이행	
안전관리 조치 사항	규정
- 시설 및 장소 운영자는 주최 및 주관, 용역 수급자, 관할지자체 담당자를 포함한 관계자들(관할 소방서 협조 요청)과 함께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 참고: 공연장 외 공연 안전 관리 가이드 (공연장안전지원센터, 2023)	-
- 합동 안전점검 결과 시설 및 장소와 관련하여 추가적인 조치사항이 필요한 경우 바로 조치하거나 주최 및 주관이 조치할 수 있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

3.3.5 관할지자체 담당자

• 주요 안전관리 사항

단계	주요 안전관리 사항	이해관계자
합동 안전점검 실시	- 공연 전 합동 안전점검 실시 및 안전점검 조치사항 이행 여부 확인	주최 및 주관 용역 수급자 시설 및 장소 운영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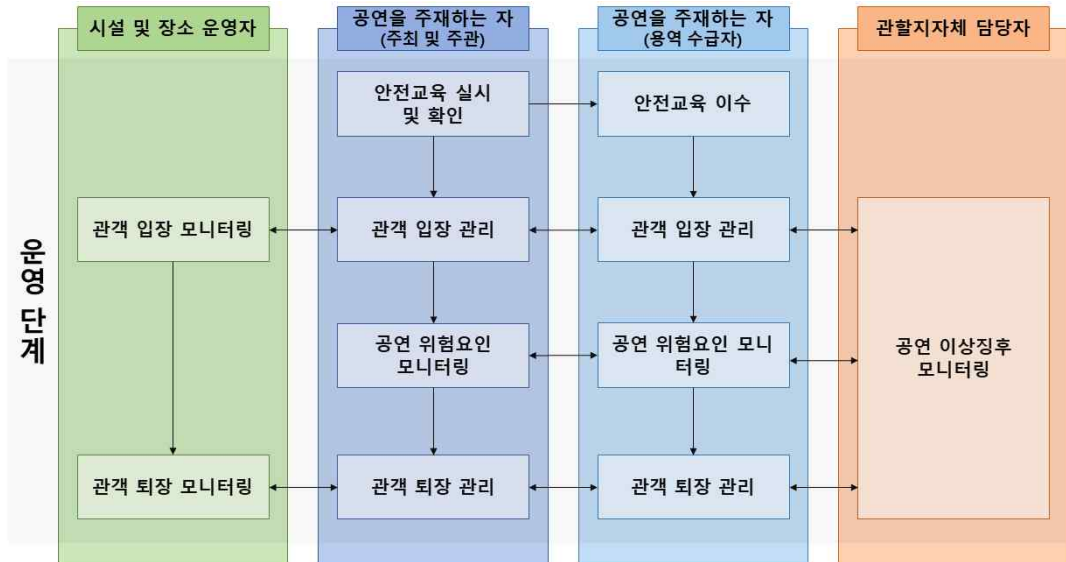
[표 13] 공연 준비 단계 주요 안전관리 사항(관할지자체 담당자)

• 「합동 안전점검 실시」 안전관리 조치 사항

공연 전 합동 안전점검 실시 및 안전점검 조치사항 이행여부 확인	
안전관리 조치 사항	규정
- 관할지자체 담당자는 주최 및 주관, 용역 수급자, 시설 및 장소 운영자를 포함한 관계자들(관할 소방서 협조 요청)과 함께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 참고: 공연장 외 공연 안전 관리 가이드 (공연장안전지원센터, 2023)	-
- 합동 안전점검 시 재해대처계획에 대한 내용이 적절하게 반영되었는지 등을 점검하고 미비한 경우 주최 및 주관에게 미흡한 사항을 보완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
- 관할지자체 담당자는 합동 안전점검 결과에 대한 조치사항이 이행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

3.4 공연 운영 단계

3.4.1 공연 운영 단계 프로세스



[그림 6] 공연 운영 단계 프로세스

3.4.2 공연을 주재하는 자(주최 및 주관)

• 주요 안전관리 사항

단계	주요 안전관리 사항	이해관계자
안전교육 실시 및 확인	- 공연자 안전교육 실시 및 수료 여부 확인 - 안전관리인력 배치 및 임무 숙지 여부 확인 - 긴급상황에 따른 대처방안 모의 훈련 실시	용역 수급자
관객 입장 관리	- 관객 입장 관리 및 관객 혼잡사고 발생 방지 모니터링 실시	용역 수급자 시설 및 장소 운영자
공연 위험요인 모니터링	- 기상(폭염, 폭우, 강풍 등) 모니터링 실시 - 관객 혼잡 발생 예상 구역 모니터링 실시 - 관객 접근 위험구역 통제 및 관리 여부 확인 - 기타 외부 위험요인(테러, 지진 등) 모니터링 실시 - 공연 전 피난 절차 등 피난안내에 관한 사항 안내 실시	용역 수급자 시설 및 장소 운영자 관할지자체 담당자
관객 퇴장 관리	- 관객 퇴장 수용 가능 여부 및 퇴장로 식별 용이성 확인	용역 수급자 시설 및 장소 운영자

[표 14] 공연 운영 단계 주요 안전관리 사항(주최 및 주관)

• 「안전교육 실시 및 확인」 안전관리 조치 사항

공연자 안전교육 실시 및 수료 여부 확인	
안전관리 조치 사항	규정
- 주최 및 주관은 공연자(출연진 또는 공연을 주재하는 자)에게 공연 전 1시간 이상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공연법 제11조의4 (p.47)

안전관리인력(경호원, 안내요원 등) 배치 및 임무 숙지 여부 확인	
안전관리 조치 사항	규정
- 주최 및 주관은 재해대처계획에 따른 안전관리인력을 지정 장소에 배치하고 지정된 장소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 주최 및 주관은 배치된 안전관리인력이 해당 임무를 숙지하고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

긴급상황에 따른 대처방안 모의 훈련(비상대피 훈련 등) 실시	
안전관리 조치 사항	규정
- 주최 및 주관은 관객 입장 전 아래의 긴급상황에 따른 대처방안 모의 훈련을 실시하고 미비한 점을 개선하여야 한다. · 화재, 지진, 정전, 테러 발생에 따른 대처 방안 · 관객 사고(압사, 관객 실신 등) 발생에 따른 대처 방안 · 출연진 사고(무대 추락, 실신 등) 발생에 따른 대처 방안	-

• 「관객 입장 관리」 안전관리 조치 사항

관객 입장 관리 및 관객 혼잡사고 발생 방지 모니터링 실시	
안전관리 조치 사항	규정
- 주최 및 주관은 공연일 전 미리 도착해서 대기하는 관객을 위한 관리방안 (공간 마련 등)을 구축하여야 한다.	-
- 주최 및 주관은 예상되는 순간 최대 동시 입장 관객 수와 티켓 및 소지품 검사 등 입장에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하여 관객 혼잡이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한 입구 수와 대기열 시스템을 구축하였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
- 주최 및 주관은 관객이 입장하면서 혼잡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객 입장을 모니터링하고 일정 밀도 이상의 관객이 모이는 경우 관객 통제 등 대응 조치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
- 주최 및 주관은 관객 입장 시 혼잡 사고 등 비상상황이 발생할 경우 재해대처계획에 따른 비상조치 대응을 하여야 한다.	-

• 「공연 위험요인 모니터링」 안전관리 조치 사항

기상(폭염, 폭우, 강풍 등) 모니터링 실시	
안전관리 조치 사항	규정
- 주최 및 주관은 폭염이 예상되는 야외 공연인 경우, 재해대처계획에 따른 폭염대응(쿨버스, 쿨존, 식수 준비 등), 폭염 단계별 대응 절차 등을 적절하게 준비하였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 참고: 야외공연 폭염대응 안전관리보건 안내서 (공연장안전지원센터, 2023)	-
- 주최 및 주관은 공연 당일 기상 예보를 통해 날씨를 확인하여야 하며 폭우, 강풍 등이 예상되는 야외 공연인 경우, 재해대처계획에 따라 대응 방안이 적절하게 준비되어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

관객 혼잡 발생 예상 구역 모니터링 실시	
안전관리 조치 사항	규정
- 주최 및 주관은 관객의 혼잡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구역을 중심으로 공연장 전반에 걸쳐서 관객 모니터링 및 보고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 주최 및 주관은 관객 혼잡이 발생할 염려가 있는 공간(일정 밀도 이상의 사람이 모이는 경우 등)에는 관객 접근 통제 등 대응 조치 방안을 마련해 두어야 한다.	-

관객 접근 위험구역 통제 및 관리 여부 확인	
안전관리 조치 사항	규정
- 주최 및 주관은 관객 접근 위험구역(발전차, 전기시설, 추락 위험 지역 등)에 관객 접근을 통제하고 안전관리인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

기타 외부 위험요인(테러, 지진 등) 모니터링 실시	
안전관리 조치 사항	규정
- 주최 및 주관은 테러 등 외부 위험요인 발생여부를 모니터링하고 신속하게 보고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공연 전 피난 절차 등 피난안내에 관한 사항 안내 실시	
안전관리 조치 사항	규정
- 주최 및 주관은 공연 시작 전 피난 절차, 거동이 불편한 관람자의 피난 방법, 공연의 특수상황, 그 밖에 비상시 대처방안 등을 공연 시작 전 관람자에게 주지시켜야 한다. - 만약 공연 중 관객의 입·퇴장이 자유로운 경우, 공연장 입장 시 상기 사항을 주지시켜야 한다.	공연법 제11조의 5 (p.48)

• 「관객 퇴장 관리」 안전관리 조치 사항

관객 퇴장 수용 가능 여부 및 퇴장로 식별 용이성 확인	
안전관리 조치 사항	규정
- 주최 및 주관은 예상되는 순간 최대 동시 퇴장 관객 수를 고려하여 관객 혼잡이 발생하지 않고 분산 퇴장이 이루어지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 주최 및 주관은 관객이 퇴장하면서 혼잡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객 퇴장을 모니터링하고 일정 밀도 이상의 사람이 모이는 경우 관객 통제 등 대응 조치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
- 주최 및 주관은 관객 입장 시 혼잡 사고 등 비상상황이 발생할 경우 재해대처계획에 따른 비상조치 대응을 하여야 한다.	-
- 주최 및 주관은 관객이 공연장 내에서 퇴장로가 식별될 수 있도록 안내되어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
- 주최 및 주관은 관객 퇴장 시 관객과 차량의 동선이 겹치지 않도록 분리하고 건물목 등에 안전관리인력을 배치하여야 한다.	-

3.4.3 공연을 주재하는 자(용역 수급자)

• 주요 안전관리 사항

단계	주요 안전관리 사항	이해관계자
안전교육 이수	- 공연자 안전교육 실시 및 수료 여부 확인 - 안전관리인력 배치 및 임무 숙지 여부 확인 - 긴급상황에 따른 대처방안 모의 훈련 실시	용역 수급자
관객 입장 관리	- 관객 입장 관리 및 관객 혼잡사고 발생 방지 모니터링 실시	용역 수급자 시설 및 장소 운영자
공연 위험요인 모니터링	- 기상(폭염, 폭우, 강풍 등) 모니터링 실시 - 관객 혼잡 발생 예상 구역 모니터링 실시 - 관객 접근 위험구역 통제 및 관리 여부 확인 - 기타 외부 위험요인(테러, 지진 등) 모니터링 실시	용역 수급자 시설 및 장소 운영자 관할지자체 담당자
관객 퇴장 관리	- 관객 퇴장 수용 가능 여부 및 퇴장로 식별 용이성 확인	용역 수급자 시설 및 장소 운영자

[표 15] 공연 운영 단계 주요 안전관리 사항(용역 수급자)

• 「안전교육 이수」 안전관리 조치 사항

공연자 안전교육 실시 및 수료 여부 확인	
안전관리 조치 사항	규정
- 용역 수급자 중 출연진 또는 공연을 주재하는 자는 주최 및 주관이 실시하는 안전교육을 수료하여야 한다.	공연법 제11조의4 (p.47)

안전관리인력(경호원, 안내요원 등) 배치 및 임무 숙지 여부 확인	
안전관리 조치 사항	규정
- 용역 수급자는 재해대처계획에 따라 안전관리인력을 배치하고 지정된 장소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 용역 수급자는 배치된 안전관리인력이 해당 임무를 숙지하고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

긴급상황에 따른 대처방안 모의 훈련(비상 대피 훈련 등) 실시	
안전관리 조치 사항	규정
- 용역 수급자는 주최 및 주관이 실시하는 아래의 긴급상황에 따른 대처방안 모의 훈련에 적극 참여하고 미비한 점을 개선하여야 한다. - 화재, 지진, 정전, 테러 발생에 따른 대처 방안 - 관객 사고(압사, 관객 실신 등) 발생에 따른 대처 방안 - 출연진 사고(무대 추락, 실신 등) 발생에 따른 대처 방안	-

• 「관객 입장 관리」 안전관리 조치 사항

관객 입장 관리 및 관객 혼잡사고 발생 방지 모니터링 실시	
안전관리 조치 사항	규정
- 용역 수급자는 관객이 입장하면서 혼잡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객 입장을 모니터링하고 일정 밀도 이상의 관객이 모이는 경우 관객 통제 등 대응 조치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
- 용역 수급자는 관객 입장 시 혼잡 사고 등 비상상황이 발생할 경우 주최 및 주관과 협조하여 재해대처계획에 따른 비상조치 대응을 하여야 한다.	-

• 「공연 위험요인 모니터링」 안전관리 조치 사항

기상(폭염, 폭우, 강풍 등) 모니터링 실시	
안전관리 조치 사항	규정
- 용역 수급자는 폭염이 예상되는 야외 공연인 경우, 안전관리인력이 폭염대응 절차에 대해 숙지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야 한다. ※ 참고: 야외공연 폭염대응 안전관리보건 안내서 (공연장안전지원센터, 2023)	-
- 용역 수급자는 공연 당일 폭우, 강풍 등이 예상되는 야외 공연인 경우, 재해 대처계획에 따라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야 한다.	-

관객 혼잡 발생 예상 구역 모니터링 실시	
안전관리 조치 사항	규정
- 용역 수급자는 관객 혼잡이 발생할 경우 주최 및 주관에게 바로 보고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 용역 수급자는 관객 혼잡 우려가 발생할 경우(일정 밀도 이상의 사람이 모이는 경우 등) 안전관리인력을 추가 배치하고 관객 통제 등 대응 조치 방안을 마련해 두어야 한다.	-

관객 접근 위험구역 통제 및 관리 여부 확인	
안전관리 조치 사항	규정
- 용역 수급자는 관객 접근 위험구역(발전차, 전기시설, 추락 위험 지역 등)에 관객 접근을 통제하고 안전관리인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

기타 외부 위험요인(테러, 지진 등) 모니터링 실시	
안전관리 조치 사항	규정
- 용역 수급자는 테러 등 외부 위험요인을 감지한 경우 바로 주최 및 주관에게 보고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 「관객 퇴장 관리」 안전관리 조치 사항

관객 퇴장 수용 가능 여부 및 퇴장로 식별 용이성 확인	
안전관리 조치 사항	규정
- 용역 수급자는 관객이 퇴장하면서 혼잡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객 퇴장을 모니터링하여야 한다.	-
- 용역 수급자는 관객 퇴장 시 혼잡 사고 등 비상상황이 발생할 경우 주최 및 주관과 협조하여 재해대처계획에 따른 비상조치대응을 하여야 한다.	-
- 용역 수급자는 관객 퇴장 시 관객과 차량의 동선이 겹치지 않도록 분리하고 건널목 등에 안전관리인력을 배치하여야 한다.	-

3.4.4 시설 및 장소 운영자

• 주요 안전관리 사항

단계	주요 안전관리 사항	이해관계자
관객 입장 모니터링	- 관객 입장 모니터링 및 비상상황 대응 실시	주최 및 주관
관객 퇴장 모니터링	- 관객 퇴장 모니터링 및 비상상황 대응 실시	주최 및 주관

[표 16] 공연 운영 단계 주요 안전관리 사항(시설 및 장소 운영자)

• 「관객 입장 모니터링」 안전관리 조치 사항

관객 입장 모니터링 및 비상상황 대응 실시	
안전관리 조치 사항	규정
- 시설 및 장소 운영자는 공연 기획단계에서 수립한 수용인원 및 군중관리 계획에 맞게 관객이 입장하는지 모니터링하여야 한다.	-
- 시설 및 장소 운영자는 관객 입장 시 혼잡 사고 등 비상상황이 발생할 경우 주최 및 주관과 협조하여 재해대처계획에 따른 비상조치 대응을 하여야 한다.	-

• 「관객 퇴장 모니터링」 안전관리 조치 사항

관객 퇴장 모니터링 및 비상상황 대응 실시	
안전관리 조치 사항	규정
- 시설 및 장소 운영자는 공연 기획단계에서 수립한 군중관리 계획에 맞게 관객이 퇴장하는지 모니터링하여야 한다.	-
- 시설 및 장소 운영자는 관객 퇴장 시 혼잡 사고 등 비상상황이 발생할 경우 주최 및 주관과 협조하여 재해대처계획에 따른 비상조치 대응을 하여야 한다.	-

3.4.5 관할지자체 담당자

• 주요 안전관리 사항

단계	주요 안전관리 사항	이해관계자
공연 이상징후 모니터링	- 공연 안전사고 징후 모니터링 실시	주최 및 주관

[표 17] 공연 운영 단계 주요 안전관리 사항(관할지자체 담당자)

• 「공연 이상징후 모니터링」 안전관리 조치 사항

관객 입장 모니터링 및 비상상황 대응 실시	
안전관리 조치 사항	규정
- 관할지자체 담당자는 공연 안전사고 징후 등을 예의주시 및 확인하여야 한다.	-

3.5 공연 철거 단계

3.5.1 공연 철거 단계 프로세스



[그림 7] 공연 철거 단계 프로세스

3.5.2 공연을 주재하는 자(주최 및 주관)

• 주요 안전관리 사항

단계	주요 안전관리 사항	이해관계자
철거 작업 계획 수립	- 공연 철거 사전 회의 및 작업 계획 수립 - 작업별 유해위험요인 점검 및 위험성평가 실시	용역 수급자
구조물 철거	- 구조물 철거 작업자 자격요건 및 안전교육 실시 여부 확인 - 작업계획에 따른 작업 실시 여부 및 작업 안전 상태 점검	용역 수급자
시설 및 장소 상태 점검	- 철거 작업 후 시설 및 장소의 원상복구 여부 확인	시설 및 장소 운영자
계약 종료 및 안전관리 내역서 제출	- 재해대처계획서에 따른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서 제출	관할지자체 담당자

[표 18] 공연 철거 단계 주요 안전관리 사항(주최 및 주관)

• 「철거 작업 계획 수립」 안전관리 조치 사항

공연 철거 사전 회의 및 작업 계획 수립	
안전관리 조치 사항	규정
- 주최 및 주관은 용역 수급자와 함께 철거 전 작업 계획을 포함한 사전회의 (Tool Box Meeting)를 실시하여야 한다.	-
- 주최 및 주관은 용역 수급자가 높이 5미터 이상의 비계를 조립·해체하거나 변경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작업의 시기·범위 및 절차를 해당 작업자에게 주지시켰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안전보건규칙 제57조 (p.51)

작업별 유해위험요인 점검 및 위험성평가 실시	
안전관리 조치 사항	규정
- 공연예술 작업자*는 안전한 창작환경에서 공연예술에 필요한 활동을 수행할 권리를 가지며, 주최 및 주관은 이러한 권리를 보장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필요한 사항은 조치하거나 시설 및 장소 운영자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 무대시설의 설치, 운영 등을 위하여 공연 현장에서 일하는 자	공연법 제10조의2 (p.45)
- 주최 및 주관은 건설물, 기계·기구·설비, 근로자의 작업행동 등으로 인한 유해·위험요인을 찾아내어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고 조치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 제36조 (p.50)

• 「구조물 철거」 안전관리 조치 사항

구조물 철거 작업자 자격요건 및 안전교육 실시 여부 확인	
안전관리 조치 사항	규정
- 비계 조립·해체 작업을 하는 작업자는 비계기능사보 이상의 자격, 3개월 이상 해당 작업에 경험이 있는 사람 등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가 작업하여야 하며, 주최 및 주관은 해당 작업자가 자격여부를 충족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취업제한규칙 제3조 (p.49)
- 비계 조립·해체 또는 변경작업을 하는 사업주(용역 수급자)는 해당 작업자에게 특별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주최 및 주관은 작업자가 해당 특별교육을 받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 법 제29조 (p.49)

작업계획에 따른 작업 실시 여부 및 작업 안전 상태 점검	
안전관리 조치 사항	규정
- 공연예술 작업자*는 안전한 창작환경에서 공연예술에 필요한 활동을 수행할 권리를 가지며, 주최 및 주관은 이러한 권리를 보장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필요한 사항은 조치하거나 시설 및 장소 운영자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공연법 제10조의2 (p.45)
- 주최 및 주관은 작업자가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알맞은 보호구를 지급하여야 하며, 작업자가 사전에 수립한 작업절차 및 안전보건규칙에 따라 안전하고 올바르게 작업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 ※ 참고: 공연장 외 공연 안전 관리 가이드 (공연장안전지원센터, 2023)	안전보건규칙 제8조 등 (4.3.3. 참고, p.52)

철거 작업 후 시설 및 장소의 원상복구 여부 확인	
안전관리 조치 사항	규정
- 주최 및 주관은 철거 작업이 완료되면 시설 및 장소 운영자와 함께 원상복구 상태를 확인하고 미흡한 경우 대관 계약에 따른 추가 조치를 하여야 한다.	-

• 「계약 종료 및 안전관리 사용내역서 제출」 안전관리 조치 사항

재해대처계획서에 따른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서 제출	
안전관리 조치 사항	규정
- 주최 및 주관은 공연이 마무리되면 대관계약 및 용역 계약을 종료하고 재해 대처계획서에 따른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서를 작성하여 공연이 종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지자체에 제출하여야 한다.	공연법 제11조의2 (p.46)

3.5.3 공연을 주재하는 자(용역 수급자)

• 주요 안전관리 사항

단계	주요 안전관리 사항	이해관계자
철거 작업 계획 수립	- 공연 철거 사전 회의 및 작업 계획 수립 - 작업별 유해위험요인 점검 및 위험성평가 실시	주최 및 주관
구조물 철거	- 구조물 철거 작업자 자격요건 및 안전교육 실시 - 작업계획에 따른 작업 실시 여부 및 작업 안전 상태 점검	주최 및 주관
자재 상태 점검·보관 및 용역 계약 종료	- 철거된 자재, 장비 등의 상태 확인 및 보관	-

[표 19] 공연 철거 단계 주요 안전관리 사항(용역 수급자)

• 「철거 작업 계획 수립」 안전관리 조치 사항

공연 철거 사전 회의 및 작업 계획 수립	
안전관리 조치 사항	규정
- 용역 수급자는 주최 및 주관과 함께 철거 전 작업 계획을 포함한 사전회의 (Tool Box Meeting)를 실시하여야 한다.	-
- 용역 수급자는 높이 5미터 이상의 비계를 조립·해체하거나 변경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작업의 시기·범위 및 절차를 해당 작업자에게 주지시켜야 한다.	안전보건규칙 제57조 (p.51)

작업별 유해위험요인 점검 및 위험성평가 실시	
안전관리 조치 사항	규정
- 공연예술 작업자*는 안전한 창작환경에서 공연예술에 필요한 활동을 수행할 권리를 가지며, 용역 수급자는 필요한 사항에 대해 주최 및 주관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 무대시설의 설치, 운영 등을 위하여 공연 현장에서 일하는 자	공연법 제10조의2 (p.45)
- 용역 수급자는 건설물, 기계·기구·설비, 근로자의 작업행동 등으로 인한 유해·위험요인을 찾아내어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고 조치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p.50)

• 「구조물 철거」 안전관리 조치 사항

구조물 설치 작업자 자격요건 확인 및 안전교육 실시	
안전관리 조치 사항	규정
- 비계 조립·해체 작업을 하는 작업자는 비계기능사보 이상의 자격, 3개월 이상 해당 작업에 경험이 있는 사람 등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가 작업하여야 하며, 용역 수급자는 해당 작업자가 자격여부를 충족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취업제한규칙 제3조 (p.49)
- 비계 조립·해체 또는 변경작업을 하는 용역 수급자는 해당 작업자에게 특별 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그 결과를 주최 및 주관에게 알려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p.49)

작업계획에 따른 작업 실시 여부 및 작업 안전 상태 점검	
안전관리 조치 사항	규정
- 공연예술 작업자*는 안전한 창작환경에서 공연예술에 필요한 활동을 수행할 권리를 가지며, 용역 수급자는 필요한 사항에 대해 주최 및 주관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 무대시설의 설치, 운영 등을 위하여 공연 현장에서 일하는 자	공연법 제10조의2 (p.45)
- 용역 수급자는 작업자가 알맞은 보호구를 착용하고 올바른 작업 자세 및 방법으로 작업하는지, 사전에 수립한 작업절차 및 안전보건규칙에 따라 안전하고 올바르게 작업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 참고: 공연장 외 공연 안전 관리 가이드 (공연장안전지원센터, 2023)	안전보건규칙 제8조 등 (4.3.3. 참고, p.52)

• 「자재, 장비 상태 점검·보관 및 용역 계약 종료」 안전관리 조치 사항

철거된 자재, 장비 등의 상태 확인 및 보관	
안전관리 조치 사항	규정
- 철거된 자재들은 구조물 위에 적재하지 않고 지정된 위치에 보관하여야 한다.	-
- 철거 후 자재에 결함이 있는지 자체적으로 점검하고 결함이 있는 자재는 나중에 사용되지 않도록 별도로 표기하거나 관리하여야 한다.	-

3.5.4 시설 및 장소 운영자

• 주요 안전관리 사항

단계	주요 안전관리 사항	이해관계자
시설 및 장소 상태 점검 및 대관계약 종료	- 철거 작업 후 시설 및 장소의 원상복구 여부 확인	주최 및 주관

[표 20] 공연 철거 단계 주요 안전관리 사항(시설 및 장소 운영자)

• 「시설 및 장소 상태 점검 및 대관계약 종료」 안전관리 조치 사항

철거 작업 후 시설 및 장소의 원상복구 여부 확인	
안전관리 조치 사항	규정
- 시설 및 장소 운영자는 공연이 마무리되면 주최 및 주관과 함께 원상복구 상태를 확인하고 미흡한 경우 대관 계약에 따라 주최 및 주관에게 바로 조치를 요구하여야 한다.	-
- 시설 및 장소 운영자는 다음 공연 대관까지 조치가 어려운 경우 해당 사항을 다음 대관자에게 알리는 등 위험요인을 개선하기 위한 업무처리 절차를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중대재해 처벌법 제9조제2항 (p.56)

3.5.5 관할지자체 담당자

• 주요 안전관리 사항

단계	주요 안전관리 사항	이해관계자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서 검토	- 제출된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서 적정성 검토	주최 및 주관

[표 21] 공연 철거 단계 주요 안전관리 사항(관할지자체 담당자)

•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서 검토」 안전관리 조치 사항

제출된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서 적정성 검토	
안전관리 조치 사항	규정
- 관할지자체 담당자는 주최 및 주관이 제출한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서가 이상이 없는지 검토하여야 한다.	공연법 제11조의2 (p.46)

공연장 외 공연 안전관리 규정 관련



4.1 공연법	_45
4.2 산업안전보건법	_49
4.3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_51
4.4 중대재해처벌법	_56
4.5 기타 법령 및 규정	_58

4. 공연장 외 공연 안전관리 관련 규정

4.1 공연법

- **공연법 제10조의2(안전한 창작환경에서 활동할 권리)**

- 공연자와 공연예술 작업자(무대시설의 설치, 운영 등을 위하여 공연 현장에서 일하는 자)는 안전한 창작환경에서 공연예술에 필요한 활동을 수행할 권리를 가지며, 공연장 외의 장소에서 공연을 하려는 자는 공연자와 공연예술 작업자의 권리를 보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공연법 제11조(재해예방조치)**

- 공연장 외의 시설이나 장소에서 1천명 이상의 관람이 예상되는 공연을 하려는 자는 화재나 그 밖의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그 공연장 종업원의 임무·배치 등 재해대처계획을 수립하여 해당 시설이나 장소 운영자와 공동으로 공연 개시 14일 전까지 아래의 사항을 포함한 재해대처계획을 관할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한 사항을 변경할 경우에는 해당 공연 7일 전까지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신고받은 재해대처계획을 관할 소방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공연장 시설 등을 관리하는 자의 임무 및 관리 조직에 관한 사항
 - 비상시 하여야 할 조치 및 연락처에 관한 사항
 - 화재예방 및 인명피해 방지조치에 관한 사항
 - 안전관리비, 안전관리조직, 안전교육 및 피난안내에 관한 사항
 - 안전관리인력 확보 및 배치 계획
 - 공연계획서
-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신고를 받은 재해대처계획을 검토하여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고된 재해대처계획의 내용이 미흡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 제2항에 따라 재해대처계획의 보완을 요구받은 공연장 외 공연을 하려는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 보완하여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다시 신고하여야 한다.

• **공연법 제11조의2(안전관리비)**

- 공연장 외의 시설이나 장소에서 1천명 이상의 관람이 예상되는 공연을 하려는 자는 공연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아래의 기준에 따라 공연비용에 계상하여야 한다.
 - 1천명 이상 3천명 미만의 관람이 예상되는 공연의 경우: 공연비용의 1.15퍼센트 이상
 - 3천명 이상의 관람이 예상되는 공연의 경우: 1.21퍼센트 이상
- 공연장 외 공연을 하려는 자는 안전관리비를 다음의 용도로만 사용해야 한다.
 - 안전관리 인력의 인건비 및 수당
 - 공연장 및 공연의 안전관리를 위한 설비의 설치·유지 및 보수
 - 보호장비의 구입
 - 공연법 제11조의4에 따른 안전교육과 그 밖의 안전교육 및 훈련
 - 공연법 제12조에 따른 무대시설의 안전진단과 그 밖의 안전점검
 - 안전 관련 보험
 - 그 밖에 공연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용도
- 공연장 외 공연을 하려는 자는 계상된 안전관리비를 사용한 경우에는 사용내역서를 작성하여 공연이 종료된 날부터 30일 이내 관할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공연법 제11조의3(안전관리조직)**

- 공연법 제11조에 따라 재해대처계획을 수립하는 공연장 외 공연을 하려는 자는 다음의 사람으로 구성된 안전관리조직을 두어야 한다.
 - 1천명 이상 3천명 미만의 관람이 예상되는 공연의 경우
 - 공연의 안전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안전총괄책임자: 1명
 - 공연 현장에서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안전관리담당자: 1명 이상
 - 3천명 이상의 관람이 예상되는 공연의 경우
 - 공연의 안전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안전총괄책임자: 1명
 - 공연 현장에서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안전관리담당자: 2명 이상
- 안전관리조직을 설치한 공연장 외 공연을 하려는 자는 안전총괄책임자 및 안전관리담당자의 인적사항 및 업무 수행 내용을 기록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 **공연법 제11조의4(안전교육)**

- 공연법 제11조에 따라 재해대처계획을 수립하는 공연장 외 공연을 하려는 자는 공연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공연에 참여하는 공연자, 안전총괄책임자, 안전관리담당자 등에게 아래의 기준에 따른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공연자: 공연 전 1시간 이상
 - 안전총괄책임자
 - 안전총괄책임자로 지정된 후 6개월 이내에 4시간 이상 또는
 - 이전 안전총괄책임자 교육을 받은 날부터 매 2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전후 각각 3개월 이내에 4시간 이상
 - 안전관리담당자
 - 안전관리담당자로 지정된 후 6개월 이내에 8시간 이상 또는
 - 이전 안전관리담당자 교육을 받은 날부터 매 2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전후 각각 3개월 이내에 8시간 이상
- 공연법 제11조의4에 따른 안전교육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공연자
 - 무대시설의 위험성과 작업의 순서 및 동선에 관한 사항
 - 작업 또는 공연 개시 전 점검에 관한 사항
 - 공연 시의 유해 및 위험 요인에 관한 사항
 - 보호장비 및 안전장치의 취급과 사용에 관한 사항
 - 정리, 정돈 및 청소에 관한 사항
 - 사고 발생 시 긴급조치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공연장 및 공연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 안전총괄책임자
 - 안전총괄책임자의 책임과 직무에 관한 사항
 - 공연의 안전 관련 제도와 정책에 관한 사항
 - 공연의 안전을 위한 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 안전관리비의 계상 및 사용방법에 관한 사항
 - 공연에서의 사고 사례와 사고예방 대책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공연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 안전관리담당자
 - 공연의 안전 관련 제도와 정책에 관한 사항
 - 안전관리 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 사고 발생 시 대처 요령에 관한 사항
 - 무대, 조명, 음향 등 분야별 안전관리 방법에 관한 사항
 - 안전관리비의 계상 및 사용방법에 관한 사항
 - 공연에서의 사고 사례와 사고예방 대책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공연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 공연장 외 공연을 하려는 자는 상기 명시된 안전교육을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 공연 안전 분야에서의 실무경력이 10년 이상인 사람
 - 대학의 조교수 이상으로서 공연 안전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공연법 제11조의5(피난안내)**

- 공연장 외의 시설이나 장소에서 1천명 이상의 관람이 예상되는 공연을 하려는 자는 화재 등 재해나 그밖의 위급한 상황의 발생 시 관람자가 안전하게 피난할 수 있도록 공연장에 피난계단·피난통로, 피난설비 등이 표시되어 있는 피난안내도를 갖추어 두거나 피난 절차, 노약자·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관람자의 피난 방법, 공연의 특수상황, 그 밖에 비상시에 대비하기 위하여 관람자가 알고 있어야 할 사항을 공연 시작 전 관람자에게 주지시켜야 한다. 다만, 공연장이 외부에 공개되어 있어 비상 시 관람객이 바로 대피할 수 있는 경우에는 피난안내도를 비치하지 않을 수 있다.

※ 참고:[부록4] 피난안내도의 비치 대상 등(공연법 시행규칙 별표 1)

• **공연법 제11조의6(사고보고의 의무 등)**

- 공연법 제11조에 따라 재해대처계획을 수립하는 공연장 외 공연을 하려는 자는 공연과 관련하여 다음의 인명·시설피해 등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공연장의 사용중지 등 재해대처계획에 따라 필요한 재해예방조치를 취하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 사망자가 1명 이상인 사고
 - 사고가 발생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실시된 의사의 최초 진단결과 2개월 이상의 입원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명 이상인 사고
 - 공연 중에 화재나 무대시설 등의 낙하·추락·전도 등에 의한 시설파손으로 공연이 중단된 후 공연이 재개될 수 있을 정도로 시설을 복구하기까지 7일 이상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 사고
- 공연법 제11조의6제1항에 따른 공연장 외 공연을 하려는 자는 상기 명시된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사고 발생일로부터 3일 이내에 다음의 사항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전화·팩스·전자우편 또는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보고해야 한다.
 - 사고 발생 일시 및 장소 - 사고 발생 경위 - 사상자 등 피해 상황
 - 사고 후 취한 재해예방조치 내용 - 향후 조치계획
- 중대한 사고에 대해 보고 받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사고 내용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통보하고, 사고조사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공연장 외 공연을 하려는 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 자료이 제출을 요청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해당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7일 이내에 자료를 제출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10일 범위에서 그 제출 기한의 연기를 신청할 수 있다.
- 누구든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실시하는 사고조사와 관련하여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회피하는 행위
 -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는 행위
 - 고의적으로 사실을 누락·은폐하는 행위

4.2 산업안전보건법

•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 사업주는 근로자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비계 조립·해체 또는 변경작업 포함)에 채용하거나 그 작업으로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아래의 사항에 따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교육 시간
 - 일용근로자 및 근로계약기간이 1주일 이하인 기간제근로자: 2시간 이상
 - 일용근로자 및 근로계약기간이 1주일 이하인 기간제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16시간 이상(최초 작업에 종사하기 전 4시간 이상 실시하고 12시간은 3개월 이내에 분할하여 실시 가능) 또는 2시간 이상(단기간 작업 또는 간헐적 작업인 경우)
 - 교육 내용
 -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 위험성 평가에 관한 사항 ·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 기계기구의 위험성과 작업의 순서 및 동선에 관한 사항 ·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작업 개시 전 점검에 관한 사항 · 정리정돈 및 청소에 관한 사항
 - 사고 발생 시 긴급조치에 관한 사항 ·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사항
 - 비계의 조립순서 및 방법에 관한 사항 · 비계작업의 재료 취급 및 설치에 관한 사항
 - 추락재해 방지에 관한 사항 · 보호구 착용에 관한 사항
 - 비계상부 작업 시 최대 적재하중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 취업제한규칙 제3조(자격·면허 등이 필요한 작업의 범위 등)

- 비계의 조립 및 해체 작업을 하는 자는 아래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비계사기능보 이상의 자격
 - 3개월 이상 해당 작업에 경험이 있는 사람(층높이가 10미터 미만인 작업에 한정)
 -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해당 분야 직업능력개발훈련 이수자
 - 이 규칙에서 정하는 해당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한 사람

•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위험성평가의 실시)**

- 사업주는 건설물, 기계·기구·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근로자의 작업행동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한 유해·위험 요인을 찾아내어 부상 및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 가능한 범위인지를 평가하여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근로자에 대한 위험 또는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사업주는 위험성평가 시 해당 작업장의 근로자를 참여시켜야 한다.
- 사업주는 아래의 내용을 포함한 위험성평가의 결과와 조치사항을 기록하여 3년간 보존해야 한다.
 - 위험성평가 대상의 유해·위험요인
 - 위험성 결정의 내용
 - 위험성 결정에 따른 조치의 내용
 - 그 밖에 위험성평가의 실시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참고: 고용노동부고시 제2023-19호,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4.3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안전보건규칙)

4.3.1 작업 계획 수립 관련

- **안전보건규칙 제57조(비계 등의 조립·해체 및 변경)**

- 사업주는 달비계 또는 높이 5미터 이상의 비계를 조립·해체하거나 변경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아래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근로자가 관리감독자의 지휘에 따라 작업하도록 할 것
 - 조립·해체 또는 변경의 시기·범위 및 절차를 그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주지시킬 것
 - 조립·해체 또는 변경 작업구역에는 해당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하고 그 내용을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할 것
 - 비, 눈, 그 밖의 기상상태의 불안정으로 날씨가 몹시 나쁜 경우에는 그 작업을 중지시킬 것
 - 비계재료의 연결·해체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폭 20센티미터 이상의 발판을 설치하고 근로자로 하여금 안전대를 사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할 것
 - 재료·기구 또는 공구 등을 올리거나 내리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달줄 또는 달포대 등을 사용하게 할 것
- 사업주는 강관비계 또는 통나무비계를 조립하는 경우 쌍줄로 하여야 한다. 다만, 별도의 작업발판을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경우에는 외줄로 할 수 있다.

4.3.2 가설구조물 설계 적정성 확인 관련

- **안전보건규칙 제51조(건축물등의 안전 유지)**

- 사업주는 건축물등이 고정하중, 적재하중, 시공·해체 작업 중 발생하는 하중, 적설, 풍압, 지진이나 진동 및 충격 등에 의하여 전도·폭발하거나 무너지는 등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설계도면, 시방서,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구조설계도서, 해체계획서 등 설계도서를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제15호**

- “구조설계도서”란 구조계획서, 구조설계도, 구조계산서, 구조분야의 공사시방서를 말한다.

• **안전보건규칙 제52조(건축물등의 안전성 평가)**

- 사업주는 건축물등이 그 자체의 무게·적설·풍압 또는 그 밖에 부가되는 하중 등으로 붕괴 등의 위험이 있을 경우에는 건축물등에 대한 구조검토, 안전진단 등의 안전성 평가를 하여 근로자에게 미칠 위험성을 미리 제거해야 한다.
- ※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산업안전과-5136, 2016.11.11.)에 따르면 축제, 공연, 행사를 위한 시설물의 일부분으로 설치되는 구조물인 경우, 구조물 자체의 중량, 조명, 무대장비 등의 적재하중, 풍압 등에 의해 붕괴·전도·도괴 등의 위험으로부터 구조안전성을 확보해야 하는 독립된 건축물로 판단됨

4.3.3 작업 안전 상태 점검 관련

• **안전보건규칙 제8조(조도)**

- 사업주는 근로자가 상시 작업하는 장소의 작업면 조도를 아래의 기준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 초정밀작업: 750럭스 이상, 정밀작업: 300럭스 이상, 보통작업: 150럭스 이상, 그 밖의 작업: 75럭스 이상

• **안전보건규칙 제13조(안전난간의 구조 및 설치요건)**

- 사업주는 근로자의 추락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경우 아래의 기준에 맞는 구조로 설치해야 한다.
 - 상부 난간대, 중간 난간대, 발끝막이판 및 난간기둥으로 구성할 것. 다만, 중간 난간대, 발끝막이판 및 난간기둥은 이와 비슷한 구조와 성능을 가진 것으로 대체할 수 있다.
 - 상부 난간대는 바닥면·발판 또는 경사로의 표면(이하 "바닥면등"이라 한다)으로부터 90센티미터 이상 지점에 설치하고, 상부 난간대를 120센티미터 이하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중간 난간대는 상부 난간대와 바닥면등의 중간에 설치해야 하며, 120센티미터 이상 지점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중간 난간대를 2단 이상으로 균등하게 설치하고 난간의 상하 간격은 60센티미터 이하가 되도록 할 것. 다만, 난간기둥 간의 간격이 25센티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중간 난간대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 발끝막이판은 바닥면등으로부터 10센티미터 이상의 높이를 유지할 것. 다만,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없거나 그 위험을 방지할 수 있는 망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예방 조치를 한 장소는 제외한다.
 - 난간기둥은 상부 난간대와 중간 난간대를 견고하게 떠받칠 수 있도록 적절한 간격을 유지할 것
 - 상부 난간대와 중간 난간대는 난간 길이 전체에 걸쳐 바닥면등과 평행을 유지할 것
 - 난간대는 지름 2.7센티미터 이상의 금속제 파이프나 그 이상의 강도가 있는 재료일 것
 - 안전난간은 구조적으로 가장 취약한 지점에서 가장 취약한 방향으로 작용하는 100킬로그램 이상의 하중에 견딜 수 있는 튼튼한 구조일 것

• **안전보건규칙 제32조(보호구의 지급)**

- 사업주는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그 작업조건에 맞는 보호구를 작업하는 근로자 수 이상으로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하며, 사업주로부터 보호구를 받거나 착용지시를 받은 근로자는 그 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 또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 안전모
 - 높이 또는 깊이 2미터 이상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하는 작업: 안전대(安全帶)
 - 물체의 낙하·충격, 물체에의 끼임, 감전 또는 정전기의 대전(帶電)에 의한 위험이 있는 작업: 안전화
 - 감전의 위험이 있는 작업: 절연용 보호구

• **안전보건규칙 제37조(악천후 및 강풍 시 작업 중지)**

- 사업주는 비·눈·바람 또는 그 밖의 기상상태의 불안정으로 인하여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 다만, 태풍 등으로 위험이 예상되거나 발생되어 긴급 복구작업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안전보건규칙 제42조(추락의 방지)**

-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작업발판의 끝·개구부 등을 제외)또는 기계·설비·선박블록 등에서 작업을 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작업발판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 추락방호망을 설치해야 한다. 다만, 추락방호망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 **안전보건규칙 제44조(안전대의 부착설비 등)**

- 사업주는 추락할 위험이 있는 높이 2미터 이상의 장소에서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시킨 경우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러한 안전대 부착설비로 지지로프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처지거나 풀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사업주는 안전대 및 부속설비의 이상 유무를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점검하여야 한다.

4.3.4 구조물 설치 상태 점검 관련

• 안전보건규칙 제54조(비계의 재료) ◦ 사업주는 비계의 재료로 변형·부식 또는 심하게 손상된 것을 사용해서는 아니 되며, 강관비계의 재료로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하는 기준 이상의 것을 사용해야 한다.
• 안전보건규칙 제55조(작업발판의 최대적재하중) ◦ 사업주는 비계의 구조 및 재료에 따라 작업발판의 최대적재하중을 정하고, 이를 초과하여 실어서는 안 된다.
• 안전보건규칙 제56조(작업발판의 구조) ◦ 사업주는 비계(달비계, 달대비계 및 말비계는 제외)의 높이가 2미터 이상인 작업장소에 아래의 기준에 맞는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 발판재료는 작업할 때의 하중을 견딜 수 있도록 견고한 것으로 할 것 - 작업발판의 폭은 40센티미터 이상으로 하고, 발판재료 간의 틈은 3센티미터 이하로 할 것 - 추락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할 것. 다만, 작업의 성질상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작업의 필요상 임시로 안전난간을 해체할 때에 추락방호망을 설치하거나 근로자로 하여금 안전대를 사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위험 방지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작업발판의 지지물은 하중에 의하여 파괴될 우려가 없는 것을 사용할 것 - 작업발판재료는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둘 이상의 지지물에 연결하거나 고정시킬 것 - 작업발판을 작업에 따라 이동시킬 경우에는 위험 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
• 안전보건규칙 제58조(비계의 점검 및 보수) ◦ 사업주는 비, 눈, 그 밖의 기상상태의 악화로 작업을 중지시킨 후 또는 비계를 조립·해체하거나 변경한 후에 그 비계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아래의 사항을 점검하고, 이상을 발견하면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 발판 재료의 손상 여부 및 부착 또는 걸림 상태 - 해당 비계의 연결부 또는 접속부의 풀림 상태 - 연결 재료 및 연결 철물의 손상 또는 부식 상태 - 손잡이의 탈락 여부 - 기둥의 침하, 변형, 변위 또는 흔들림 상태 - 로프의 부착 상태 및 매단 장치의 흔들림 상태
• 안전보건규칙 제59조(강관비계 조립 시의 준수사항) ◦ 사업주는 강관비계를 조립하는 경우에 아래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 비계기둥에는 미끄러지거나 침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밑받침철물을 사용하거나 깔판·받침목 등을 사용하여 밑둥잡이를 설치하는 등의 조치를 할 것 - 강관의 접속부 또는 교차부는 적합한 부속철물을 사용하여 접속하거나 단단히 묶을 것 - 교차 가새로 보강할 것 - 가공전로에 근접하여 비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가공전로를 이설하거나 가공전로에 절연용 방호구를 장착하는 등 가공전로와의 접촉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할 것

• **안전보건규칙 제60조(강관비계의 구조)**

- 사업주는 강관을 사용하여 비계를 구성하는 경우 아래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 비계기둥의 간격은 띠장 방향에서는 1.85미터 이하, 장선 방향에서는 1.5미터 이하로 할 것. 다만, 장비 반입·반출을 위하여 공간 등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등 작업의 성질상 비계기둥 간격에 관한 기준을 준수하기 곤란한 작업의 경우에는 안전성에 대한 구조검토를 실시하고 조립도를 작성하면 띠장 방향 및 장선 방향으로 각각 2.7미터 이하로 할 수 있다.
 - 띠장 간격은 2.0미터 이하로 할 것. 다만, 작업의 성질상 이를 준수하기가 곤란하여 쌓기둥틀 등에 의하여 해당 부분을 보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비계기둥의 제일 윗부분으로부터 31미터되는 지점 밑부분의 비계기둥은 2개의 강관으로 묶어 세울 것. 다만, 브라켓 등으로 보강하여 2개의 강관으로 묶을 경우 이상의 강도가 유지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비계기둥 간의 적재하중은 400킬로그램을 초과하지 않도록 할 것

• **안전보건규칙 제69조(시스템 비계의 구조)**

- 사업주는 시스템 비계를 사용하여 비계를 구성하는 경우에 아래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수직재·수평재·가새재를 견고하게 연결하는 구조가 되도록 할 것
 - 비계 밑단의 수직재와 받침철물은 밀착되도록 설치하고, 수직재와 받침철물의 연결부의 겹침길이는 받침철물 전체길이의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할 것
 - 수평재는 수직재와 직각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체결 후 흔들림이 없도록 견고하게 설치할 것
 - 수직재와 수직재의 연결철물은 이탈되지 않도록 견고한 구조로 할 것
 - 벽 연결재의 설치간격은 제조사가 정한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 **안전보건규칙 제70조(시스템비계의 조립 작업 시 준수사항)**

- 사업주는 시스템 비계를 조립 작업하는 경우 아래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비계 기둥의 밑등에는 밑받침 철물을 사용하여야 하며, 밑받침에 고저차가 있는 경우에는 조절형 밑받침 철물을 사용하여 시스템 비계가 항상 수평 및 수직을 유지하도록 할 것
 - 경사진 바닥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피벗형 받침 철물 또는 췌기 등을 사용하여 밑받침 철물의 바닥면이 수평을 유지하도록 할 것
 - 가공전로에 근접하여 비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가공전로를 이설하거나 가공전로에 절연용 방호구를 설치하는 등 가공전로와의 접촉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
 - 비계 내에서 근로자가 상하 또는 좌우로 이동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지정된 통로를 이용하도록 주지시킬 것
 - 비계 작업 근로자는 같은 수직면상의 위와 아래 동시 작업을 금지할 것
 - 작업발판에는 제조사가 정한 최대적재하중을 초과하여 적재해서는 아니 되며, 최대적재하중이 표기된 표지판을 부착하고 근로자에게 주지시키도록 할 것

4.4 중대재해처벌법

• 중대재해처벌법 제9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제2항 및 3항

-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공중이용시설의 설계, 설치, 관리상의 결함으로 인한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아래의 사항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공중이용시설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한 경우에는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제2항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그 시설, 장비, 장소 등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10조(공중이용시설관련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

- 중대재해처벌법 제9조제2항제1호에 따른 조치의 구체적인 사항은 아래와 같다.
 - 아래의 사항을 위한 필요한 인력을 갖추어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업무를 수행할 것
 - 중대재해처벌법령에 따른 안전관리 업무의 수행
 - 공중이용시설에 대해 연 1회 이상 수립된 안전계획의 이행
 -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국토교통부고시 제2022-55호 참고)
 - 아래의 사항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편성·집행할 것
 - 중대재해처벌법령에 따른 인력·시설 및 장비 등의 확보·유지와 안전점검 등의 실시
 - 공중이용시설에 대해 연 1회 이상 수립된 안전계획의 이행
 -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국토교통부고시 제2022-55호 참고)
 -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의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안전점검 등을 계획하여 수행되도록 할 것

- 공중이용시설에 대해 연 1회 이상 아래의 내용이 포함된 안전계획을 수립하게 하고, 충실히 이행하도록 할 것. 다만, 공중이용시설에 대해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6조에 따라 시설물에 대한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을 수립·추진하는 경우로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이 그 수립 여부 및 내용을 직접 확인하거나 보고받은 경우에는 안전계획을 수립하여 이행한 것으로 본다.
 - 공중이용시설의 안전과 유지관리를 위한 인력의 확보에 관한 사항
 - 공중이용시설의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의 실시에 관한 사항
 - 공중이용시설의 보수·보강 등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 상기 사항을 반기 1회 이상 점검하고, 직접 점검하지 않은 경우에는 점검이 끝난 후 지체 없이 점검 결과를 보고받을 것
- 점검 또는 보고 결과에 따라 인력을 배치하거나 예산을 추가로 편성·집행하도록 하는 등 중대시민재해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
-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해 아래의 사항이 포함된 업무처리절차를 마련하여 이행할 것
 - 공중이용시설의 유해·위험요인의 확인·점검에 관한 사항
 - 공중이용시설의 유해·위험요인을 발견한 경우 해당 사항의 신고·조치요구, 이용제한, 보수·보강 등 그 개선에 관한 사항
 -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한 경우 사상자 등에 대한 긴급구호조치,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긴급안전점검, 위험표지 설치 등 추가 피해방지 조치, 과계 행정기관 등에 대한 신고와 원인조사에 따른 개선조치에 관한 사항
- 제3자에게 공중이용시설의 운영·관리 업무의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하는 경우 공중이용시설과 그 이용자나 그 밖의 사람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아래에 따른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그 기준과 절차에 따라 도급, 용역, 위탁 등이 이루어지는지를 연 1회 이상 점검하고, 직접 점검하지 않은 경우에는 점검이 끝난 후 지체 없이 점검 결과를 보고받을 것
 -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능력 및 안전관리능력에 관한 평가기준·절차
 - 도급, 용역, 위탁 등의 업무 수행 시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비용에 관한 기준

4.5 기타 법령 및 규정

4.5.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11(지역축제 개최 시 안전관리조치)

-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축제를 개최하려면 해당 지역축제가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그 밖에 안전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다중의 참여가 예상되는 지역축제로서 개최자가 없거나 불분명한 경우에는 참여 예상 인원의 규모와 장소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그 밖에 안전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의 이행 실태를 지도·점검할 수 있으며, 점검결과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정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외의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축제를 개최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축제가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사전에 통보하고, 그 밖에 안전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외의 자로부터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을 통보 받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에 대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을 요구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지역축제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 경찰관서, 소방관서 및 그 밖에 관계 기관의 장에게 협조 또는 해당 기관의 소관 사항에 대한 역할 분담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지역축제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 소방관서 및 그 밖에 관계 기관·단체 등이 참여하는 지역안전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3조의9(지역축제 개최 시 안전관리조치)**

-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그 밖에 안전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는 지역축제는 아래와 같다.
 - 축제기간 중 순간 최대 관람객이 1천명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축제
 - 산 또는 수면에서 개최하는 지역축제
 - 불, 폭죽, 석유류 또는 가연성 가스 등의 폭발성 물질을 사용하는 지역축제
- 안전관리계획에는 아래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지역축제의 개요
 - 해당 지역축제의 안전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및 관리조직과 임무에 관한 사항
 - 화재예방 및 다중운집 등에 따른 인명피해 방지조치에 관한 사항
 - 안전관리인력의 확보 및 배치계획
 - 비상시 대응요령, 담당 기관과 담당자 연락처
- 지역축제를 개최하려는 자가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려면 개최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 소방관서 및 경찰관서 등 안전관리 유관기관의 의견을 미리 들어야 하며, 축제 개최일 3주 전까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축제 개최일 7일 전까지 변경된 내용을 제출해야 한다.
- 축제기간 중 순간 최대 관람객이 1천명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축제(이 외의 지역축제로서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참여 예상 이원의 규모와 장소 등을 고려하여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의 수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축제를 포함한다)로서 개최자가 없거나 불분명한 경우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수립한다.
-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관할 시·군·구의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을 받아 이를 종합하여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시·도지사 및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에 따라 안전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 시장·군수·구청장이 해당 지역축제에 대해 시·군·구의 안전관리 역량을 넘는 규모로 판단하거나 광범위한 지역에서의 다중운집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여 시·도지사에게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의 수립을 요청하는 경우
 - 동일한 지역축제가 2개 이상의 시·군·구에서 동시에 열리는 경우
 - 그 밖에 지역축제의 안전한 진행을 위해 시·도지사가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외의 자가 지역축제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을 말한다)은 관할 경찰관서, 소방관서 및 그 밖의 관계 기관의 장에게 아래의 구분에 따른 사항의 협조 또는 역할 분담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외의 자가 지역축제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개최자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하는 경우에만 관할 경찰관서 등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 관할 경찰관서의 장
 - 교통 및 보행 안전관리, 질서유지 등을 위한 경찰관 배치
 - 범죄 예방을 위한 순찰
 - 다중운집 위험정보 수집 및 관계기관 공유
 - 지역축제 행사장 현장 경찰연락관 운영
 - 그 밖에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관할 경찰관서의 소관 업무 중 지역축제 안전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
 - 관할 소방관서의 장
 - 긴급자동차 대기 및 소방관 배치
 - 소방안전점검
 - 지역축제 행사장 현장 소방연락관 운영
 -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관할 소방관서의 소관 업무 중 지역축제 안전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
 - 그 밖의 관계 기관의 장
 -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축제의 안전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지역축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아래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시·도지사 소속으로 시·도 지역안전협의회를, 시장·군수·구청장 소속으로 시·군·구 지역안전협의회를 둔다.
 -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의 수립·이행에 관한 사항
 -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 이행 및 비상시 대처를 위한 기관 간 협조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
 - 지역축제의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지역축제의 안전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

4.5.2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소방시설법)

- 소방시설법제20조(특정소방대상물의 방염 등)

- 근린생활시설(체육단련장, 공연장 및 종교집회장), 건축물의 옥내에 있는 문화 및 집회시설·종교시설·운동시설·숙박이 가능한 수련시설에 실내장식 등의 목적으로 설치 또는 부착하는 물품으로 아래의 물품은 방염성능 기준 이상의 것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 제조 또는 가공 공정에서 방염처리를 한 다음 각 목의 물품
 - 벽지류(두께 2mm 미만인 종이벽지는 제외)
 - 무대용 합판·목재 또는 섬유판(합판·목재류의 경우 불가피하게 설치 현장에서 방염처리한 것을 포함)
 - 암막·무대막
 - 건축물 내부의 천장이나 벽에 부착하거나 설치하는 다음 각 목의 것. 단, 가구류와 너비 10cm 이하인 반자돌림대 등과 내부 마감재료 제외
 - 종이류(두께 2mm 이상인 것)·합성수지류 또는 섬유류를 주원료로 한 물품
 - 합판이나 목재
 - 공간을 구획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간이 칸막이
 - 흡음을 위하여 설치하는 흡음재(흡음용 커튼 포함)
 - 방음을 위하여 설치하는 방음재(방음용 커튼 포함)

- 소방시설법제21조(방염성능의 검사)

- 특정소방대상물에 사용하는 방염대상물품은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방염성능검사를 받은 것이어야 한다. 다만, 아래의 방염대상물품의 경우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실시하는 방염성능검사를 받은 것이어야 한다.
 - 제조 또는 가공 공정에서 방염처리를 하여야 하는 무대용 합판·목재 중 설치 현장에서 방염처리를 하는 합판·목재류
 - 건축물 내부의 천장이나 벽에 부착하거나 설치하는 합판이나 목재

- 소방시설법제22조(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그 대상물에 설치되어 있는 소방시설등이 소방시설법에 적합하게 설치·관리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소방시설법에 정해진 기간 내에 스스로 점검하거나 점검능력 평가를 받은 관리업자 또는 기술자격자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점검하게 하여야 한다.

• 특정소방대상물(소방시설법 제5조 관련) 예시(「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 2」 참고)

- 근린생활시설
 - 공연장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 미만인 것
-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으로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
 - 공연장으로서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
 - 집회장: 예시장, 공회당, 회의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
 - 관람장: 경마장, 경륜장, 경정장, 자동차 경기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과 체육관 및 운동장으로서 관람석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이상인 것
 - 전시장: 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문화관, 체험관, 기념관, 산업전시장, 박람회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 동·식물원: 동물원, 식물원, 수족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 종교시설: 종교집회장으로서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
- 판매시설: 도매시장, 소매시장, 전통시장으로서 그 안에 있는 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하며, 노점형시장은 제외
- 교육연구시설
 - 학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대학, 대학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학교
 - 교육원(연수원,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 수련시설:-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특화시설, 청소년수련원, 청소년야영장, 유스호스텔,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 운동시설
 - 탁구장, 체육도장, 테니스장, 체력단련장, 에어로빅장, 물놀이형 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
 - 체육관으로서 관람석이 없거나 관람석의 바닥면적이 1천㎡ 미만인 것
 - 운동장: 육상장, 구기장, 볼링장, 수영장, 스케이트 등과 이에 딸린 건축물로서 관람석이 없거나 관람석의 바닥면적이 1천㎡ 미만인 것
- 위락시설
 - 유원시설업의 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로서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
 - 무도장 및 무도학원
- 방송통신시설: 방송국(방송프로그램 제작시설 포함), 촬영소
- 관광 휴게시설: 야외음악당, 야외극장, 공원·유원지 또는 관광지에 부수되는 건축물

4.5.3 건축물관리법

- 건축물관리법 제12조(건축물의 유지·관리)

- 관리자는 건축물, 대지 및 건축설비를 「건축법」 및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적합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 건축물관리법 제13조(정기점검의 실시)

- 다중이용 건축물 등 정기점검 대상 건축물의 관리자는 건축물의 안전과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정기점검은 대지, 높이 및 형태, 구조안전, 화재안전, 건축설비, 에너지 및 친환경 관리, 범죄예방, 건축물 관리계획의 수립 및 이행 여부 등에 대하여 실시한다(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8조 참고).

- 정기점검 대상 건축물(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8조 관련)

- [다중이용업소가 있는 건축물](#)로서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건축물로서 연면적 3천㎡ 이상인 건축물
- 「[건축법 시행령](#)」제2조제17호에 따른 다중이용 건축물
- 「[건축법 시행령](#)」제2조제17호의2에 따른 준다중이용 건축물로서 같은 조 [제18호](#)에 따른 특수구조 건축물에해당하는 건축물

4.5.4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응급의료법)

- 응급의료법 제54조의3(대규모 행사에서의 응급의료 인력 등 확보 의무)

- 순간 최대 관람객이 1천명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행사를 개최하려는 자(공연법에 따라 재해대처계획의 신고가 수리된 행사는 제외)는 응급환자의 발생 시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아래의 응급의료 인력과 응급이송수단을 확보해야 한다.
 - 응급의료 인력: 응급구조사, 의사 또는 간호사 1명
 - 응급이송수단: 구급차등 1대

부록



- 부록1. 공연 수용인원 산출 예시 _64
- 부록2. 비상 시 현장 대응 조치 가이드(압사 사고 관련) _68
- 부록3. 대관 운영 규정을 통한 안전 확보 방안 _70
- 부록4. 피난안내도의 비치 대상 등 _73

[부록1] 공연 수용인원 산출 예시

1.1 수용인원 산출 관련 규정

관련 지침명	지침 개발 및 관리 기관	면적 기준 수용인원 지침
ESG (Event Safety Guide)	ESA (Event Safety Alliance)	- 1인 점유 면적이 0.5 m² 이하 : 위험한 군중 밀집도가 됨 - 1인 점유 면적이 0.46 m² 이하 : 보행자의 움직임이 매우 제한됨 - 1인 점유 면적이 0.2787 m²인 경우 : 의도치 않은 접촉 등으로 타인에게 피해를 주게 됨 - 1인 점유 면적이 0.1858 m²인 경우 : 여러 사람이 위험에 처하게 될 수 있음
NFPA 101	NFPA (The National Fire Protection Association)	- 1인 0.46 m²를 할당하도록 권장(일반적으로 서서 보는 관람 구역 기준)
IFC section 1004 (Table 1004.5)	IFC (International Fire Code)	- 스탠딩 공간의 1인 점유 면적은 2 ft² (0.4645 m²)로 함
The Purple Guide to Health, Safety and Welfare at Outdoor Events	UK event professionals primarily	- 1인 0.5 m²를 할당하도록 권장(이벤트 안전을 위한 일반 지침)

1.2 출구의 유효너비 관련 규정

관련 지침명	지침 개발 및 관리 기관	출구 너비 적용 기준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0조	국토교통부 (대한민국)	- 관람실별로 2개소 이상 설치 - 각 출구의 유효너비는 1.5미터 이상일 것 - 개별 관람실 출구의 유효너비의 합계는 개별 관람실의 바닥면적 100제곱미터마다 0.6미터의 비율로 산정한 너비 이상으로 할 것
IFC section 1005**	IFC (International Fire Code)	- 출구(계단)의 넓이 산출 : (7.6 mm / 1명) 이상으로 계산 [단, 자동 스프링클러 설비와 비상 안내·경보 장치가 있는 경우에는 (5.1 mm / 1명)으로 적용 가능] - 출구(평지)의 넓이 산출 : (5.1 mm / 1명) 이상으로 계산 [단, 자동 스프링클러 설비와 비상 안내·경보 장치가 있는 경우에는 (3.8 mm / 1명)으로 적용 가능]

*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에 관한 기준에 관한 규칙은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에 적용되는 기준이며, "관람실"의 정의가 스탠딩 객석 구역(입석)에 특정하지 않을 수 있음을 고려하여야 함

** 출구의 유효너비 관련 해외 규정에서는 바닥면적이 아닌 수용인원 기준으로 그 출구의 넓이를 정하고 있으므로, 수용인원을 검토하는 조건으로 해당 기준을 우선 적용하는 것을 권장함

1.3 수용인원 산출 시 고려 사항

- 실내 시설물에서의 총 수용인원은 격벽이 있는 거실 바닥면적에 따라, 관련 해외규정(NFPA 101, IFC section 1004)를 적용하여 산출하는 것을 권장함. (특히 IFC의 경우에는 총 수용인원에 따른 출구의 너비 기준까지 검토할 수 있도록 지침이 마련되어 있음)
- 다만, 실내 시설물의 건축구조(출구 형태, 출구 너비, 경로 등)에 따라 비상 대피 시간이 다르므로, 위의 해외 규정을 참고하되 비상시 대피 시간을 고려하여 시설물의 총 수용인원을 검토 및 보완하는 것을 권장함.
- 실내 시설물에서의 스탠딩 객석 구역은 그 시설물의 일부 구역을 사용하는 것이므로, 스탠딩 객석 구역 내부에서의 관람객 1인당 점유 면적은 시설물의 총 수용인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하되, 관람객 1인당 점유 면적에 따른 위험도에 따라 군중 안전관리 능력을 강화하는 것을 권장함. (관람객 점유 면적에 따른 위험도 참고 : ESG(Event Safety Guide))
- 별도의 출구가 없는 실외 공연 장소일 경우에는 총 수용인원에 대한 기준이 별도로 없으므로, 스탠딩 객석 구역의 관람객 1인당 점유 면적에 관한 사항만 고려하여 검토 가능

1.4 수용인원 산출 예시

-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은 “관람실”의 바닥면적으로만 그 유효너비를 산출하는 것이므로, 규정에서의 “관람실”이 “스탠딩(입석)”에 특정하지 않기에, “스탠딩(입석)”을 고려한 수용인원 산출 조건으로 활용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음
- 해외 규정에서는 바닥면적이 아닌 수용인원으로 출구의 너비에 대한 기준을 정하고 있어, 원활한 관객 입·퇴장 운영 및 비상시 안전한 대피 등을 위해 해외 규정(국제소방코드 IFC)을 적용하여 시설물의 총 수용인원을 산출하는 것을 권장함
- 총 수용인원 산출 예시에 따라, 시설물의 출구 너비로 인하여 총 수용인원이 한정되는 경우, 건축물 구조 및 소방시설 개선 조치를 통해 면적당 최대 수용인원까지 증가시킬 수 있음을 시사함

1.4.1 실내 건축시설의 총 수용인원 산출 예시

조건 예시	- 공연장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은 실내 건축물에서의 공연 - 실내 시설물의 바닥 면적은 1,000 m²로 가정 - 1인 점유 면적을 0.46 m² 적용 시 (NFPA 101, IFC section 1004 준용)
출구 유효너비 적용 기준	출구(계단)의 너비 산출 : (7.6 mm / 1명) 이상으로 계산 [단, 자동 스프링클러 설비와 비상 안내·경보 장치가 있는 경우에는 (5.1 mm / 1명)으로 적용 가능] 출구(평지)의 너비 산출 : (5.1 mm / 1명) 이상으로 계산 [단, 자동 스프링클러 설비와 비상 안내·경보 장치가 있는 경우에는 (3.8 mm / 1명)으로 적용 가능]

수용인원 검토	① 면적당 수용인원 : 2,173명 (단, 아래의 출구 형태와 자동 스프링클러 및 비상 안내·경보장치 설치 유·무에 따른 출구 너비 합계 이상이어야 함) - 면적당 수용인원 산출 : $1,000 \text{ m}^2 \times (1 \text{인} / 0.46 \text{ m}^2) = 2,173 \text{명}$ ② “①”에서 산출된 면적당 수용인원인 2,173명을 적용하기 위한 조건은 아래와 같음 - 출구가 “계단” 형태일 경우, 출구 너비 합계가 11.08 m*가 되어야 함 (단, 자동 스프링클러와 비상 안내경보 장치가 없는 경우의 출구 너비 합계는 16.51 m**로 적용) * $2,173 \text{명} \times (0.0051 \text{ m} / 1 \text{명}) = 11.08 \text{ m}$ ** $2,173 \text{명} \times (0.0076 \text{ m} / 1 \text{명}) = 16.51 \text{ m}$ - 출구가 “평지” 형태일 경우, 출구 너비 합계가 8.26 m*가 되어야 함 (단, 자동 스프링클러와 비상 안내경보 장치가 없는 경우의 출구 너비 합계는 11.08 m**로 적용) * $2,173 \text{명} \times (0.0038 \text{ m} / 1 \text{명}) = 8.26 \text{ m}$ ** $2,173 \text{명} \times (0.0051 \text{ m} / 1 \text{명}) = 11.08 \text{ m}$
------------	--

1.4.2 좌석이 없는 스탠딩 객석 구역의 관람 인원 산출 예시

조건 예시	- 공연장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은 실내 건축물에서의 공연 - 실내 시설물의 바닥 면적은 1,000 m²로 가정 - 실내 시설물 중 스탠딩 객석 구역의 면적이 500 m²로 가정
스탠딩 객석 구역 관람 인원 적용 기준	※ ESG(Event Safety Guide) 참고 - 1인 점유 면적이 0.46 m² 이하 : 보행자의 움직임이 매우 제한됨 - 1인 점유 면적이 0.2787 m²인 경우 : 의도치 않은 접촉 등으로 타인에게 피해를 주게 됨 - 1인 점유 면적이 0.1858 m²인 경우 : 여러 사람이 위험에 처하게 될 수 있음
수용인원 검토	① 위의 조건 예시에 따라 스탠딩 객석 구역 관람 인원 산출 결과는 아래와 같다. - 면적당 수용인원 0.46 m² 적용 시 : $500 \text{ m}^2 \times (1 \text{명} / 0.5 \text{ m}^2) = 1,087 \text{명}$ - 면적당 수용인원 0.2787 m² 적용 시 : $500 \text{ m}^2 \times (1 \text{명} / 0.2787 \text{ m}^2) = 1,794 \text{명}$ - 면적당 수용인원 0.1858 m² 적용 시 : $500 \text{ m}^2 \times (1 \text{명} / 0.1858 \text{ m}^2) = 2,691 \text{명}$ ② “1) 실내 건축 시설의 총 수용인원 산출 예시”에 따라, 실내 시설물의 총 수용인원이 2,173명일 경우, 스탠딩 객석 구역의 관람 인원과 그 외 공연시설을 사용하는 관계자와 좌석 관객의 합계가 2,173명 미만이어야 함. - “①”의 면적당 수용인원 0.2787 m²에 따른 1,794명은 허용 가능(단, 그 외 인원을 포함한 전체 인원이 시설물 총 수용인원 미만일 경우) - “①”의 면적당 수용인원 0.1858 m²에 따른 2,691명은 허용 불가(시설물 총 수용인원 초과) ③ 단, 스탠딩 객석 공간의 1인 점유 면적이 낮으면, 해당 공간에서의 군중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높으므로, 훈련된 전문 관객 안전관리인력 배치와 군중 통제 대책 강화 등으로 안전관리를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음

[부록2] 비상 시 현장 대응 조치 가이드(압사 사고 관련)

2.1 군중 사고 발생 시

- 공연 중 군중 혼잡 발생 : 공연 관계자는 공연 중지 후, 출연진에게 군중 혼잡에 의한 중단임을 밝히고, 공연 음향 시스템과 관객 안전관리인력으로 혼잡 상황을 수습하여야 한다.
- 공연 입·퇴장 시 군중 혼잡 발생 : 시설물 비상 방송시스템, 휴대용 확성기 등을 통해 혼잡 상황 발생을 모든 관객에게 안내하고, 모든 관람객의 이동을 멈추도록 지시 후, 혼잡 구역의 군중 관리 및 통제 조치를 통해 상황을 정리하여야 한다.
- 군중 혼잡으로 인한 압사 사고 우려가 있는 경우 모든 방송시스템을 활용하여 다음의 관객 행동 요령을 전파하여야 한다.

※ 공연 중 스탠딩 객석 구역에서의 압사 사고 예방을 위한 안내 사항 전파

- (1단계) 공연 중지 후 압사 사고 발생 위험 안내
- (2단계) 앞 사람을 밀지 않고, 양팔로 가슴을 보호하는 자세를 취하며, 넘어졌을 땐 몸을 옆으로 웅크리도록 안내
- (3단계) 군중 이동이 멈추면 뒤로 서서히 뒤로 한 보씩 이동 안내

※ 공연 입·퇴장 등 이동 시 압사 사고 예방을 위한 안내 사항 전파

- (1단계) 압사 사고 발생 위험으로 이동 중지 안내
- (2단계) 앞 사람을 밀지 않고, 양팔로 가슴을 보호하는 자세를 취하며, 넘어졌을 땐 몸을 옆으로 웅크리도록 안내
- (3단계) 관람객 밀집 구역의 군중 관리 및 통제 조치(혼잡 상황 정리)

- 군중 혼잡 상황이 정리되더라도 시설 및 환경 특성에 의해 재발 가능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군중 혼잡 발생 구역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여야 하며, 군중 혼잡이 지속되거나 악화하여 압사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면 전체 공연을 중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2 군중 사고 발생 시

- 스피커 등 확성기를 활용하여 압사 사고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모든 관객에게 알리고 군중 이동을 멈추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압사 사고 구역까지 관객 안전관리인력이 접근하여 응급환자 이송 또는 현장 응급조치를 위해 주변 관객 이동 지시 및 통제 조치하여야 한다.
- 압사 사고 구역이 평지가 아닐 경우, 환자를 심폐소생술이 가능한 평지로 이송 조치
- 자동심장충격기가 있는 시설일 경우, 자동심장충격기를 응급조치 구역으로 전달하여야 한다.
- 환자의 의식 및 호흡 상태를 확인하면서 응급조치를 준비하여야 한다. (119 전화 연결과 동시에 실시하며, 119 전화 연결 성공 후 응급환자 조치를 위한 의료 지도를 받으면서 응급조치 시행 필요)
- 심폐소생술이 필요할 경우, 2인 1조로 심폐소생술 실시하고, 자동심장충격기가 있는 경우 이를 활용하여 응급조치하여야 한다.

[부록3] 대관 운영 규정을 통한 안전 확보 방안

공연시설 및 장소 관리자가 공연 안전을 위해 공연 주최자에게 요구해야 하는 사항은 자체 대관 운영 규정 등을 통해 전달되어야 하며, 공연시설 및 장소 관리자는 공연 현장에서 공연 대관 규정이 올바르게 준수되고 있는지 관리·감독하여, 관리하는 시설 및 장소에서 안전사고 발생 예방에 노력하여야 한다.

3.1 대관 운영 규정에 포함되어야 할 주요 사항

구분	안전 관리 계획 검토 사항
대관 승인의 거절 및 취소	시설 및 장소 운영자는 공연 주최자가 안전 요구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대관 승인을 거절 및 취소할 수 있음
시설 및 장소 사용의 제한	- 시설 및 장소 운영자는 공연 주최자가 아래의 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시설의 사용 제한 또는 중지시킬 수 있음 - 관련 법령(공연법, 산업안전보건법 등)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 대관운영규정의 안전 요구사항 및 재해대처계획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 선착순 입장, 수용인원 초과 등 관객 혼잡에 의한 안전사고가 예상되는 경우 - 폭설, 폭우, 태풍 등 천재지변으로 인한 안전사고가 예상되는 경우
재해대처계획 신고	1천명 이상의 관람이 예상되는 경우 시설 및 장소 운영자와 공연 주최자가 공동으로 관할지자체에 공연 개최 14일 전까지 재해대처계획을 신고하여야 함 - 공연 주최자는 재해대처계획 검토 기간을 고려하여 (예. 공연 개최 20일 전까지) 시설 및 장소 운영자에게 제출하여야 함 - 시설 및 장소 운영자의 검토 결과 보완요청이 있을 경우 이를 반영하여 관할 지자체에 14일 전까지 신고하여야 함
공연 전 안전점검	- 공연 주최자는 시설 및 장소 운영자와 공연전 아래의 사항에 대해 합동 사전 점검을 실시하여야 함 - 소화설비 및 응급장비의 상태 점검 - 피난설비(피난구유도등, 통로유도등 등)의 상태 점검 - 수용인원 대비 피난 경로 확보 상태 점검 - 객석 구역 내 위험요인 및 관객 출입 제한 구역 점검 - 응급실, 응급조치인력 및 응급차량 등의 배치 계획 점검 - 공연 주최자는 합동 사전점검 결과 위험요인이 파악된 경우, 시설 및 장소 운영자와 협의하여 공연 전까지 조치 및 대책을 마련하여야 함
관객 안전 관리	- 공연 주최자는 재해대처계획에 수립한 수용인원 및 군중관리 계획을 준수하여야 하며, 관객 입장부터 퇴장까지 관객의 안전 및 질서유지를 위하여 관객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야 함 - 공연 주최자는 관객 관련 사고가 발생할 경우, 지체없이 재해대처계획에 따른 비상 상황 대응을 실시하여야 함

3.2 대관 운영 규정 예시

※ 참고

대관 운영 규정 예시는 관객 안전 관리 분야에 필요한 주요 내용만을 다룬 것이므로, 공연 안전을 위해 필요한 추가 사항(시설물 안전 관리, 특수효과 안전 등)은 별도의 자료 조사 등을 통해 내부 운영 규정으로 마련하는 것을 권장한다.

□ 대관 승인의 거절 및 취소

○○○○(시설 및 장소 관리 주체)는 대관신청·승인된 공연이 아래의 사항에 해당할 경우 대관승인을 거절하거나 대관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1. 대관운영규정의 안전 요구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2. 기한 내에 재해대처계획을 제출하지 않거나 수정 및 보완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 시설 및 장소 사용의 제한

○○○○(시설 및 장소 관리 주체)는 승인된 공연이 다음 사항에 해당할 경우 시설 사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지시킬 수 있다.

1. 관련 법령(공연법, 산업안전보건법 등)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2. 대관운영규정의 안전 요구사항 및 재해대처계획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3. 선착순 입장, 수용인원 초과 등 관람객 혼잡에 의한 안전사고가 예상되는 경우
4. 폭설, 폭우, 태풍 등 천재지변으로 인한 안전사고가 예상되는 경우

□ 재해대처계획

- ① 대관 사용자는 공연 개최 ○○일 전까지 재해대처계획을 수립하고 ○○○○(시설 및 장소 관리 주체)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② 제출한 재해대처계획서는 관련 법령 및 대관운영규정의 안전 요구사항의 기준에 적합해야 하며, 기준에 부적합할 경우 ○○○○(시설 및 장소 관리 주체)는 수정이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 ③ 대관 사용자는 재해대처계획의 수정 및 보완을 요구받은 경우, 재해대처계획서를 보완하여 ○○○○(시설 및 장소 관리 주체)에게 제출하여 재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③ 대관 사용자는 재해대처계획을 승인받은 경우, 공연 개최 14일 전까지 관할지자체에 신고하여야 한다.

□ 공연 전 안전점검

- ① 대관 사용자는 ○○○○(시설 및 장소 관리 주체)와 함께 아래의 사항에 대해 공연 전에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대관 사용자는 ○○○○(시설 및 장소 관리 주체)의 안전점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1. 소화설비 및 응급장비의 상태 점검
 2. 피난설비(피난구유도등, 통로유도등 등)의 상태 점검
 3. 수용인원 대비 피난 경로 확보 상태 점검
 4. 객석 구역 내 위험요인 및 관객 출입 제한 구역 점검
 5. 응급실, 응급조치인력 및 응급차량 등의 배치 계획 점검
 6. 기타 안전 취약 및 위험요인 점검
- ② 대관 사용자는 공연 전 안전점검 결과 위험요인이 파악된 경우, ○○○○(시설 및 장소 관리 주체)와 협의하여 공연 전까지 조치 및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 관객 안전 관리

- ① 대관 사용자는 재해대처계획에 수립한 관객의 수용인원 및 군중관리계획을 준수하고 관객 입장부터 퇴장까지 관객의 안전 및 질서유지를 위하여 관객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야 한다.
- ② 대관 사용자는 관객 관련 사고가 발생할 경우, 지체없이 재해대처계획에 따른 비상 상황 대응을 실시하여야 한다.

[부록4] 피난안내도의 비치 대상 등(공연법 시행규칙 별표 1)

1. 피난안내도의 비치

가. 피난안내도 비치 대상: 공연장(법 제11조의5제2항 및 영 제9조의5에 따라 공연장 외의 장소에서 1천명 이상의 관람자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공연을 하는 장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다만, 공연장이 외부에 공개되어 있어 비상 시 관람객이 바로 대피할 수 있는 경우에는 비치하지 않을 수 있다.

나. 피난안내도의 위치: 공연장 출입구 부분으로서 관람객이 쉽게 볼 수 있는 위치

다. 피난안내도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 1) 비상 시 대피할 수 있는 피난계단·피난통로·비상구·하강기·피난사다리 등의 위치
- 2) 구획된 실(室) 등에서 비상구 및 출입구까지의 피난 동선
- 3) 소방시설(소화기·소화전·휴대용 비상조명등 등) 및 심장박동기 등 응급장비의 위치 및 사용방법
- 4) 피난안내도의 위치(현재 위치 표시)
- 5) 비상 시 엘리베이터 사용금지 내용 등 피난 및 대처 방법

라. 피난안내도의 크기 및 재질 등

- 1) 크기: B4(257mm×364mm) 이상의 크기로 할 것. 다만, 각 층별 공연장의 면적 또는 공연장이 위치한 층의 바닥면적이 각각 400㎡ 이상인 경우에는 A3(297mm×420mm) 이상의 크기로 해야 한다.
- 2) 재질: 종이(코팅처리 한 것을 말한다), 아크릴, 강판 등 쉽게 훼손 또는 변형되지 않는 것으로 해야 한다.

마. 피난안내도의 설치 방법

관람객이 피난안내도를 바라보는 위치에서 보이는 공연장의 형태 및 방향이 피난안내도상에 표시된 형태 및 방향과 일치해야 한다.

바. 피난안내도에 사용하는 언어: 한국어 및 1개 이상의 외국어를 사용하여 작성해야 한다.

2. 피난의 안내

가. 피난안내 대상: 공연장

나. 피난안내의 방법 및 시기

- 1) 방법: 공연장의 상황에 따라 안내방송 또는 영상물 방영 등의 방법으로 관람객에게 안내해야 한다.
- 2) 시기: 관람객이 공연장 입장을 완료한 후 매 회 공연 시작 전까지 안내해야 한다.

다. 피난안내 시 포함되어야 할 내용

- 1) 비상 시 대피할 수 있는 피난계단·피난통로·비상구 등의 위치
- 2) 구획된 실(室) 등에서 비상구 및 출입구까지의 피난 동선
- 3) 공연의 특수상황(화염, 연기를 사용한 연출 등)에 대한 사전 안내
- 4) 장애인·노인·아동의 피난 시 도움 요청 방법
- 5) 그 밖에 피난 및 대처 방법 등 비상 상황을 대비하여 알아야 할 사항

라. 피난안내 방송 및 영상물에 사용하는 언어: 한국어 및 1개 이상의 외국어를 사용하여 작성하거나 방송해야 한다.

공연장 외 공연 안전 매뉴얼

글 쓴 이 김동균, 윤성흠, 강민석
기획개발 한국산업기술시험원 공연안전지원센터
15588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해안로 723
02-860-1177 www.stagesafety.or.kr
발 행 일 초판 2024. 12
발 행 처 한국산업기술시험원
ISBN 979-11-962221-5-4
© 한국산업기술시험원 2024



이 책은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원사업으로 운영되는 공연안전지원센터에서 공연장 외 공연에 대한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위하여 제작한 것입니다.